

2024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공공건물편



사단
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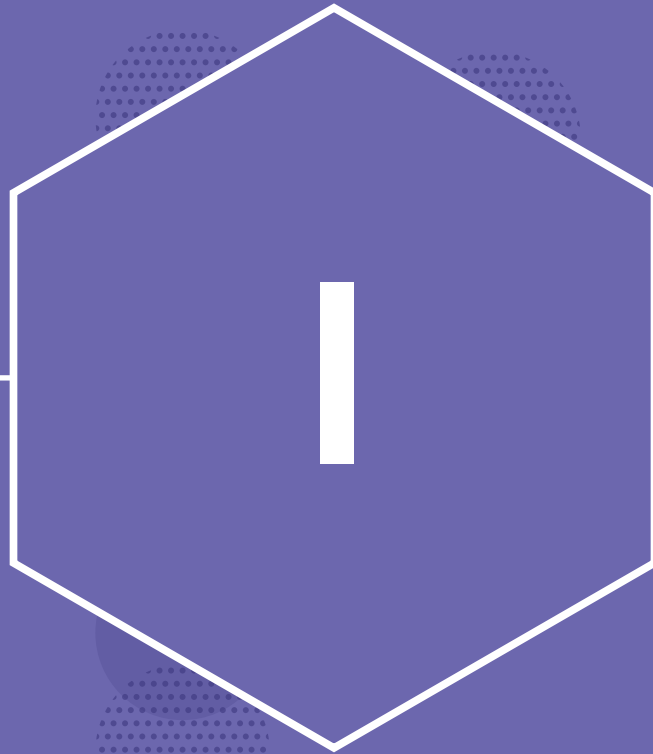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 공공건물편

본 매뉴얼은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제작하여 점자블록, 점자 편의시설 등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로 공공건물 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및 이동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둬. 따라서 공공건물 내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별로 설치·시공하여야 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올바른 지침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도록 함.

I. 개요	1. 목적	6
	2. 활용 방법	6
	3.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고려사항	7
	4. 용어 정리	8
	5. 매뉴얼 적용 범위	9
	6. 매뉴얼 구성	10
II.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14
	2.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21
	3.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25
	4.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32
	5.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37
	6. 장애인용 승강기	44
	7.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49
	8. 경사로	53
	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56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62
	11. 점자블록	63
	12.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69
	13.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75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78
	1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80
	16.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82
III. 부록	1. 점자블록	86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2. 점자표지판	92
	3.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	96
	4. 음성유도기	99
	5. 시각 및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	101
	6.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102

이미지출처

-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 여객시설 편 - 한국장애인개발원
-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안내 및 유도 매뉴얼 -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수정2판) - 한국장애인개발원
- 점자편의시설 표준 지침서 - 국립국어원



개요

1. 목적
2. 활용 방법
3.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고려사항
4. 용어 정리
5. 매뉴얼 적용 범위
6. 매뉴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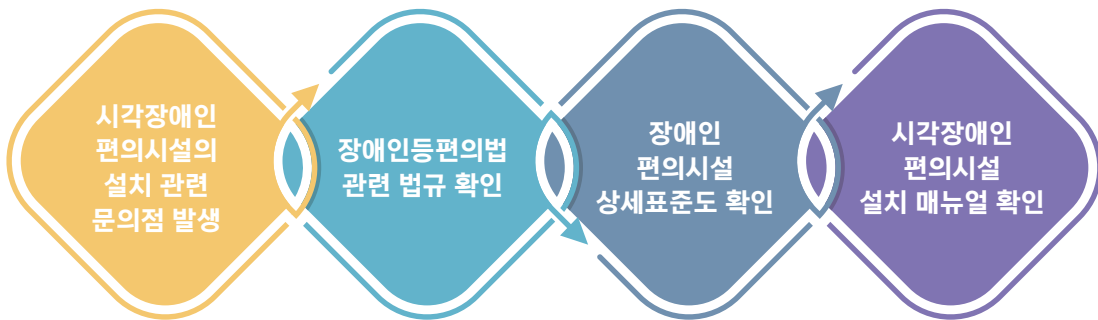
I 개요

1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방법을 시행령에 따라 정리하여 건축 시공사, 편의시설 전문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무분별하고 잘못 설치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건축 협의, 기술 지도, 상담 지침용은 물론 건축설계, 건축허가, 용도 등의 편의시설 관련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사례별 설치 지침을 정립하고자 함

2 활용 방법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3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고려사항

가.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필요치수

1) 저시력 및 고령자를 고려한 정보 표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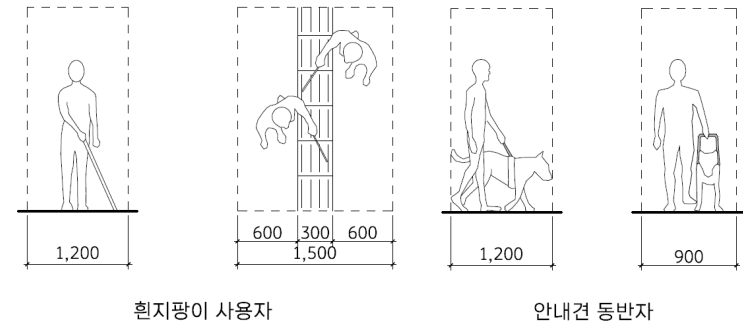
가) 안내표지판: 안내표시를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KoddUD체 등 이와 유사한 글자체)를 사용하며, 주변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하여 문자 표시하도록 한다. 이때 명도차는 최소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나) 화장실 픽토그램: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으로 명확하게 색상이 구분되는 픽토그램을 사용한다.

2) 시각장애인 보행을 위한 필요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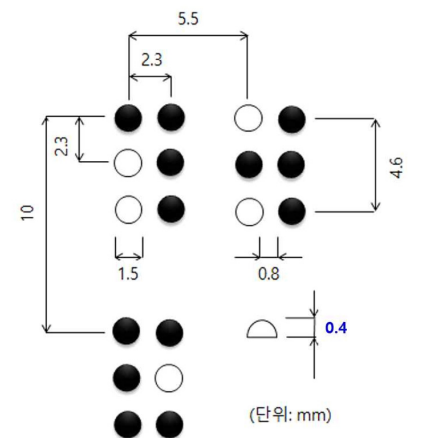
가) 흰지팡이 보행을 위한 최소 폭은 1.2미터이며, 점자블록을 활용한 흰지팡이 보행은 최소 1.5미터이다.

나) 안내견을 통한 보행의 최소 폭은 0.9미터이며 길이 방향은 최소 1.2미터이다.



나. 점자 표기

점자 편의시설 등 점자 표기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0005호) 및 '점자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국립국어원 2021)를 참고하도록 한다.





4 용어 정리

가. 시각장애인의 법적 정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시각장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2)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4)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장애인등편의법에 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매개시설: 접근로, 단차, 경사로, 출입구(문) 등
- 2) 내부시설: 실내 출입구,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 3) 위생시설: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 일반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탈의실 등
- 4)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등
- 5) 기타시설: 관람석, 열람석, 매표소, 자동판매기, 음료대, 작업대 등

다. 차도: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보도와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通行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라. 보도: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차도와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通行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마. 보행장애물: 접근로에 설치된 가로등, 전주, 가로수 등으로 장애인 등의 보도 상通行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지칭하는 것이다.

바. 유효폭: 보행장애물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通行에만 이용되는 폭을 말한다.

사. 턱낮추기: 휠체어사용자, 유모차 등의 원활한通行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 진입부, 교통신, 안전지대 등에 설치하여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줄이는 방법을 말한다.

아. 경사로: 계단이 설치된 육교나 지하도, 건물 진입로 등에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의 원활한通行을 돕기 위해서 설치하는 완만한 기울기를 가진 시설물을 말한다.

자. 경사로의 기울기: 경사로의 기울기는 1/A의 형식으로 말하며, 1의 높이를 해소하기 위해 A의 거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차. 계단참: 계단의 연속높이가 높은 경우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디딤판을 길게 늘어 계단 중간에 배치하는 여유 공간이다.

카. 묵자: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인쇄된 문자와 숫자, 기호를 통칭하는 것으로 점자와 대비되는 용어이다.

5 매뉴얼 적용 범위

본 매뉴얼을 적용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범위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의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며, 동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이외의 대상시설은 해당 시설의 기능과 형태를 고려하여 그와 유사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침을 준용하도록 한다.

6 매뉴얼의 구성

<예시>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기본 원칙

접근로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건축물과 도로를 오고 갈 수 있는..

나. 적용 범위

건축물 대지의 경계선에서부터 시작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문) 전면까지의..

다. 설치 기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3의 가. 일반사항을 원칙으로 기술

1) 일반사항

가) 접근로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2)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3의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라. 세부 기준 및 지침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1) 경계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① '공작물' 설명

- 상시 고정물을 뜻한다.
- 칼라콘, 입간판 등은 상시 고정물이 아니므로 부적정하다.
- 불법 블라드(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의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에 맞지 않은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등), U형의 대형 화분 등은 시각장애인 보행에 장애 요소로 부적정하다.

세부기준의 내용 중 올바른 설명,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매뉴얼 지침

2)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추가 내용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그 단차 발생 부분은 **모따기 처리**를 하여야 한다.

'모따기 처리' 지침

- 단차 발생 모서리 부근의 각을 따는 것을 뜻한다.
- 단차의 각이 있을 경우 발이나 휠자전거가 걸려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4조에 따라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표준설계도서로 보기 때문에 세부기준 외 추가 내용에 관한 지침 내용을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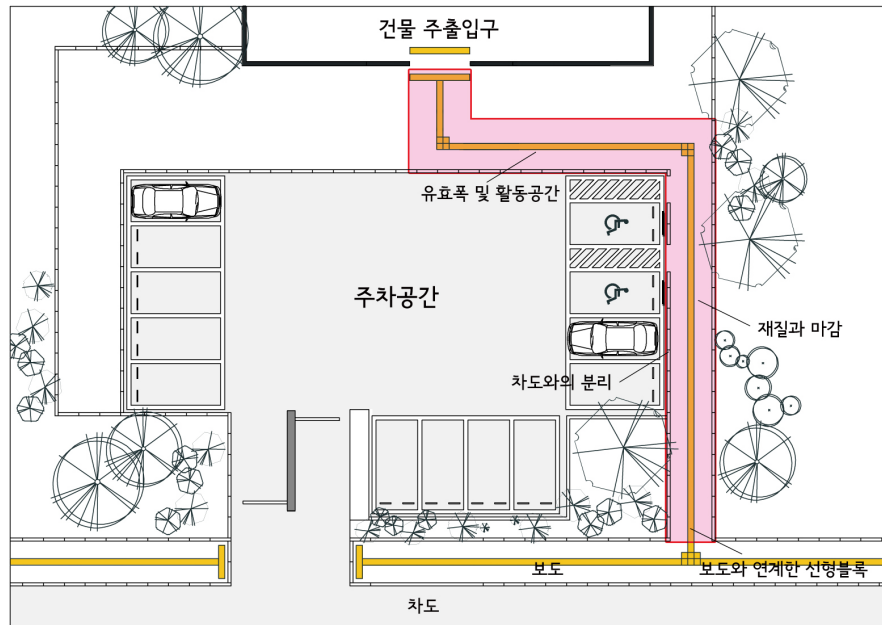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2.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3.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4.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5.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6. 장애인용 승강기
7.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8. 경사로
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11. 점자블록
12.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13.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1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16.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II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기본 원칙

접근로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건축물과 도로를 오고 갈 수 있는 보행환경이어야 한다.

나. 적용 범위

건축물 대지의 경계선에서부터 시작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문) 전면까지의 진입동선을 적용 범위로 하며, 대지면적 내 여러 건축물이 독립적으로 배치된 경우는 각 건축물의 주출입문까지로 한다.

다. 설치 기준

1) 일반사항

- 가) 접근로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 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 (2)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4) 대피소
- (5) 공중화장실
- (6)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7) 지역아동센터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 일반음식점(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2) 일반음식점(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 (3) 공연장
- (4) 안마사술소
- (5)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 (6)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7) 독서실, 기원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 및 관람장
- (2) 집회장
- (3) 전시장, 동·식물원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바) 의료시설

병원·격리병원

사) 교육연구시설

- (1)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 (2) 유치원
- (3)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4)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아) 노유자시설

- (1)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 (2)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 (3)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자)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차) 운동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카) 업무시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2)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3)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2) 관광숙박시설

파) 공장

하) 자동차관련시설

- (1) 주차장
- (2) 운전학원

거) 방송통신시설

- (1)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2)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너)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더)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 (1)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2) 휴게소

머) 장례식장

라. 세부 기준 및 지침

1) 경계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속·올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① '공작물' 지침

- 상시 고정물을 뜻한다.
- 칼라콘, 입간판 등은 상시 고정물이 아니므로 부적정하다.
- 불법 볼라드(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의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에 맞지 않은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등)은 충돌시 크게 다칠 수 있고, U형의 대형 화분이나 역U형 볼라드 등은 하부 공간이 없어 흰지팡이가 인지할 수 없는 등 시각장애인 보행에 장애 요소가 되어 부적정하다.



②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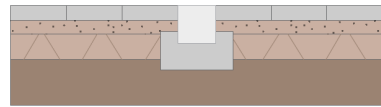
- 접근로와 차도 사이 경계의 바닥마감이 접근로와 대비되어야 함을 뜻하며, 접근로와 차도의 바닥마감재의 질감이 달리 함도 적정하다.
-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정도로 질감을 달리하여야 하므로, 흰지팡이나 신발을 신고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질감 차이가 있어야 한다.
- 단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가 30센티 미만인 경우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없어 부적정하다.
- 질감의 다른 정도는 바닥재 자체의 차이를 뜻하는 것이며 패턴, 줄눈 등의 변화로는 질감을 달리할 수 없다.

2) 재질과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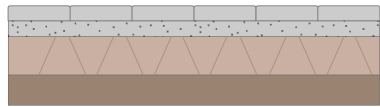
가)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면이 평탄'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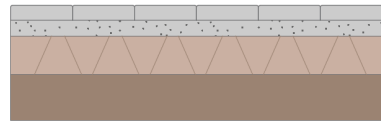
- 블록의 표면 높이가 균일함을 뜻한다.
- 블록 표면이 부정형인 경우 발에 걸리거나 흰지팡이가 보행할 때 걸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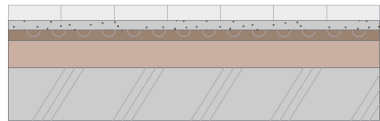
재료분리경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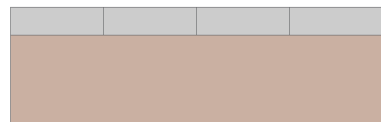
소형고압블럭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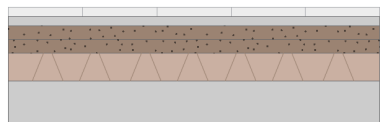
화강석판석포장



화강석통석포장



인조화강석블럭포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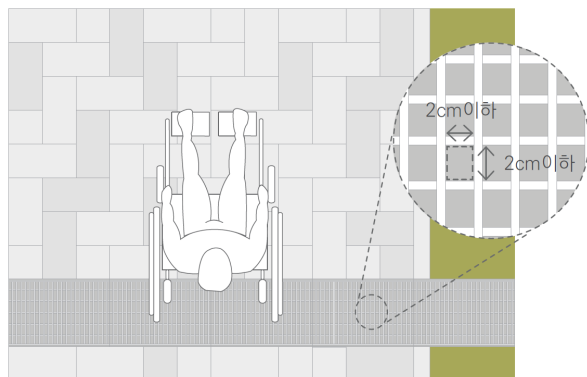


인조화강석블럭포장2

나)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 지침

- 시각장애인을 위한 흰지팡이가 빠지거나 걸리지 않은 최소 틈새 간격을 뜻한다.
- 구멍이 격자형인 경우 가로나 세로 중 한 면의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이면 적정하고, 디자인그레이팅 등 구멍의 형태가 비격자형인 경우 가장 넓은 틈새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보행장애물

가)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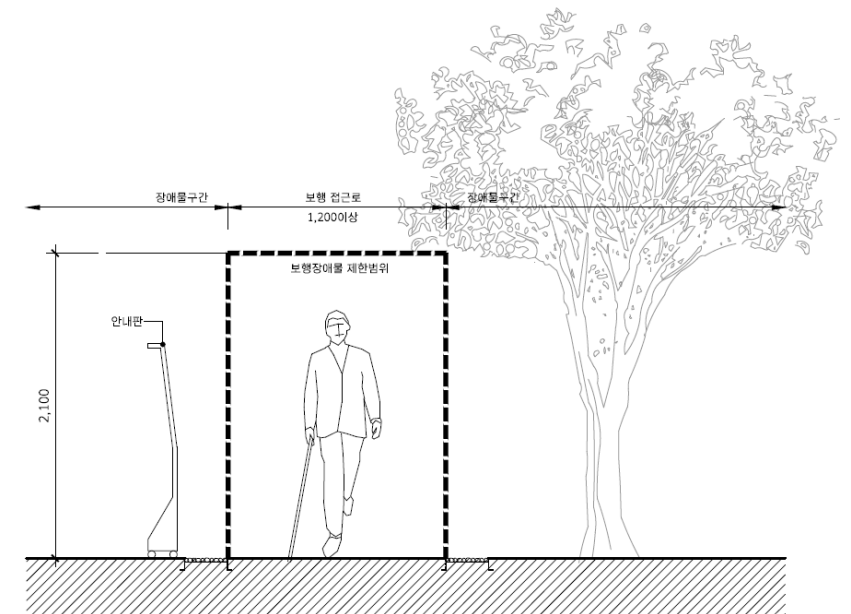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 지침

- 시각장애인은 점자블록 등 보행기준선을 통해 직선 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보행 방향의 연직선상에 지장물이 있는 경우 보행 장애요소가 된다.
- 접근로에 선형블록을 설치한 경우 선형블록의 외곽선 기준 좌우 0.6미터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 가급적 접근로는 균일한 폭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나)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1미터까지 가지치기' 지침

- 접근로로 돌출되는 가로수의 가지는 시각장애인 눈썰림 등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이다.
- 조경 설계단계에서 접근로 측면 조경의 수목은 가지가 방사형이나 평면형 등 아래로 자라는 종류로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4)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추가 내용

가) 접근로에 계단과 경사로가 있을 경우 계단과 경사로 양측면에 손잡이와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계단의 시작과 끝에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전면 0.3미터에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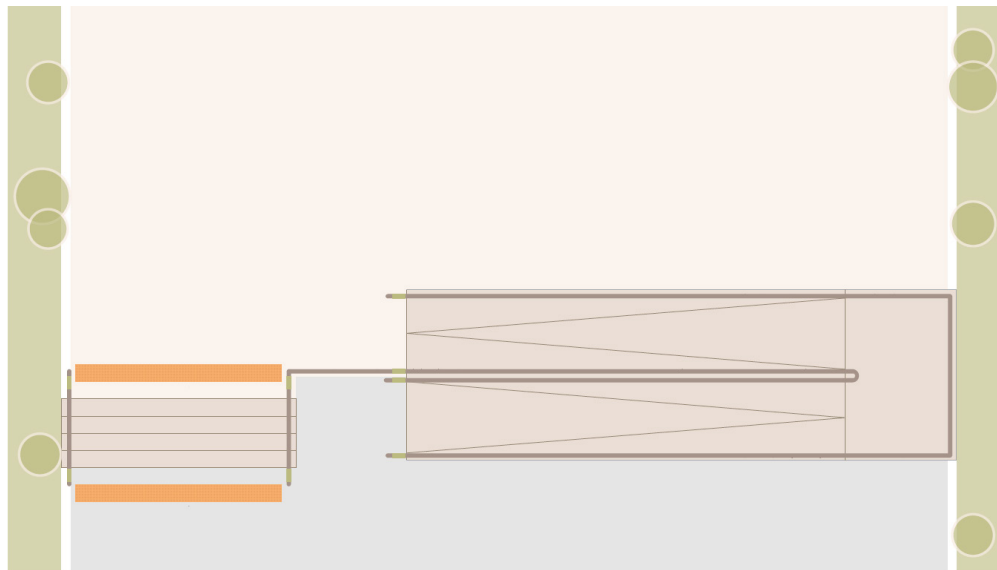
① '점자표지판을 설치' 지침

- 접근로에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점자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 '내려감', '올라감' 등의 점자 문구는 부적절하며, '→ 00빌딩 주출입구 방면', '→ 00주차장 방면', '→ 좌측 00구청 본관, 우측 별관 방면', '→ 나가는 곳' 등 실제 위치에 맞는 목적지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 손잡이에 부착하는 것이 아닌 리벳팅 등으로 설치하여 내구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단순 부착으로 시공할 경우 지속적인 관리문제가 발생하고 점자표지판이 들뜨거나 떨어져서 손뼉 등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②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전면 0.3미터에 설치' 지침

- 시각장애인이 계단의 시작과 끝을 바닥 정보를 통해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함을 뜻한다.
- 계단의 시작과 끝에는 계단참도 포함된다.
- 계단의 '폭만큼'이라 함은 계단 손잡이의 내폭 만큼을 설치해야 함을 뜻한다. 손잡이 내폭의 치수가 2미터인 경우 6장(2,000/300 = 6.666, 소수점 버림으로 6), 1.6미터인 경우 5장(1,600/300 = 5.333, 소수점 버림으로 5)을 설치한다.
- 상기 지침에도 불구하고 주출입구 전면에 계단 폭이 보행자 접근 동선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경우 출입구 폭의 1.5배 정도까지 점형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 계단 폭만큼이라 하여 점형블록을 절단하여 일부를 설치하는 등 현장 가공은 하지 않는다.

나) 가)의 세부기준은 5. 계단과 8. 경사로에 관한 지침을 각각 적용한다.



2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기본 원칙

주출입구 전면의 계단이나 높이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경사로 등의 양측면 손잡이에는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적용 범위

주출입구와 접근로의 높이차이로 인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적용 범위로 한다. 단 지형상, 시설 특성상 부출입구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할 경우 적용 범위는 부출입구 전면으로 한다. 대지면적 내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각 주출입구 전면을 적용 범위로 본다.

다. 설치 기준

1) 일반사항

-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접근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단 양측면에 손잡이와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또한 높이차이 제거를 위해 턱낮추기를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되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고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 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 (2)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4) 대피소
- (5) 공중화장실
- (6)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7) 지역아동센터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 (1) 일반음식점(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2) 일반음식점(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 (3) 공연장
- (4) 안마시술소
- (5)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 (6)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7) 독서실, 기원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 및 관람장
- (2) 집회장
- (3) 전시장, 동·식물원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바) 의료시설

병원·격리병원

사) 교육연구시설

- (1)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 (2) 유치원
- (3)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4)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아) 노유자시설

- (1)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 (2)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 (3)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자)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차) 운동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카) 업무시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2)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3)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2) 관광숙박시설

파) 공장

하) 자동차관련시설

- (1) 주차장
- (2) 운전학원

거) 방송통신시설

- (1)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2)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너)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더)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 (1)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2) 휴게소

머) 장례식장

라. 세부 기준 및 지침

1) 경사로 손잡이 점자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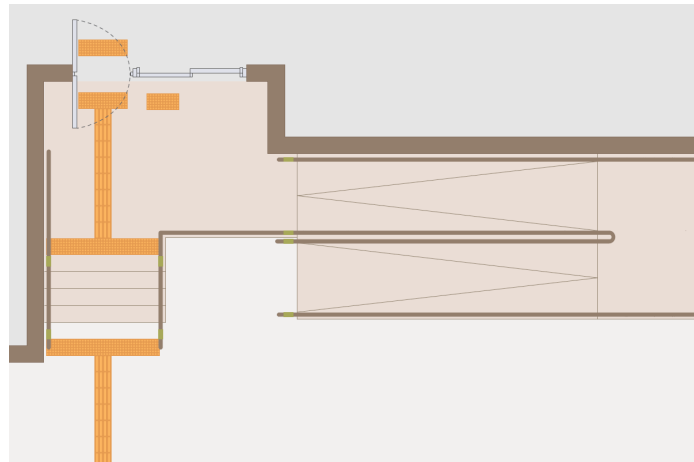
경사로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① ‘굴절부분’ 지침

-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꺾임을 의미하나 경사로 참이나 단순히 손잡이 방향이 바뀌는 부분에는 점자표지판 설치를 생략한다.
- 1)에도 불구하고 굴절부분에서 새로운 목적지 방향이 발생하거나 분기점이 있는 경우에는 굴절부분에 새로운 목적지 정보나 분기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설치하도록 한다.

② ‘점자표지판을 부착’ 지침

- 점자표지판을 손잡이에 설치함을 뜻한다.
- “부착”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물체나 물건을 다른 물체나 표면에 붙이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스티커 방식이나 접착제로 붙이는 수준을 뜻할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손잡이와 점자표지판을 결착하거나 체결하는 등의 수준(리벳시공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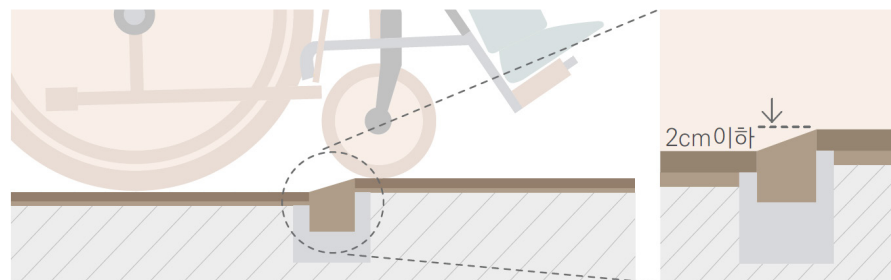


2)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추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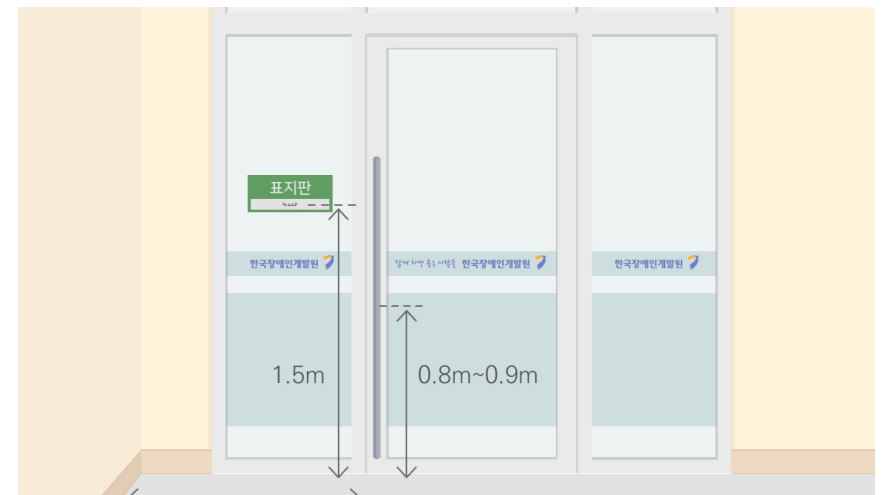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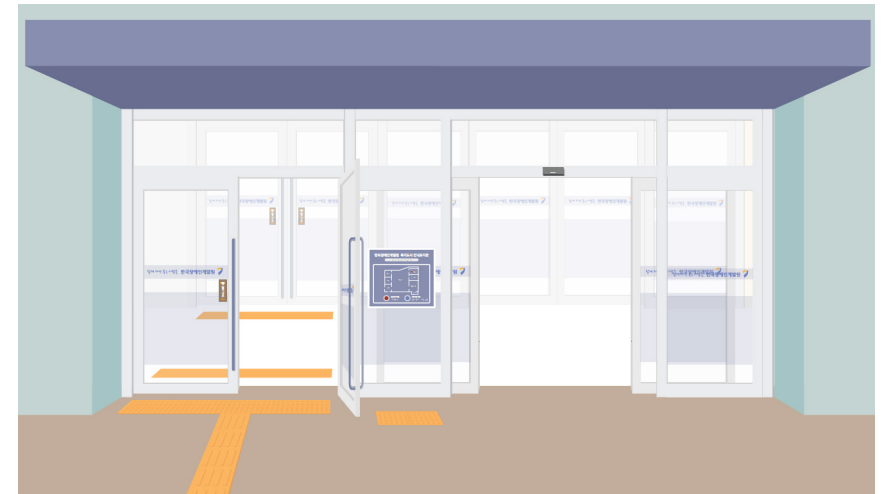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그 단차 발생 부분은 모따기 처리를 하여야 한다.

‘모따기 처리’ 지침

- 단차가 발생한 모서리의 직각 부분을 삼각 형태로 처리하여 단차 발생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뜻한다.
- 단차의 각이 있을 경우 발이나 휠체어가 걸려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다.



3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기본 원칙

주출입문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실내와 실외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출입문 벽면에 점자를 표기하여 실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적용 범위

- 1) 건축물의 주출입문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되 지형상 또는 시설 특성상 부출입구가 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적용 범위는 부출입구 한다. 대지면적 내 여러 건축물이 독립적으로 배치된 경우 각 주출입문을 적용 범위로 한다.
- 2) 건축물 내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실을 점자표지판 설치 적용 범위로 한다.



다. 설치 기준

1) 일반사항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시각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시각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 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 (2)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4) 대피소
- (5) 공중화장실
- (6)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7) 지역아동센터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 일반음식점(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2) 일반음식점(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 (3) 공연장
- (4) 안마시술소
- (5)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 (6)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7) 독서실, 기원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 및 관람장
- (2) 집회장
- (3) 전시장, 동·식물원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바) 의료시설

병원·격리병원

사) 교육연구시설

- (1)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 (2) 유치원
- (3)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4)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아) 노유자시설

- (1)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 (2)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 (3)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자)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차) 운동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카) 업무시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2)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3)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2) 관광숙박시설

파) 공장

하) 자동차관련시설

운전학원

거) 방송통신시설

- (1)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2)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너)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더)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 (1)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2) 휴게소

머) 장례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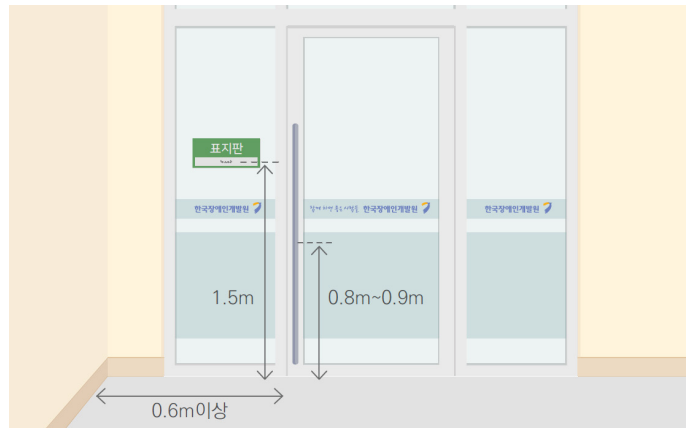
라. 세부 기준 및 지침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지침

- 출입문의 문손잡이 쪽 측벽에는 0.6미터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함을 뜻한다.
- 휠체어사용자의 발판으로 인해 문 손잡이까지 손을 뻗을 수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점자표지판의 촉지 접근성 확보를 위해 문 손잡이 측벽에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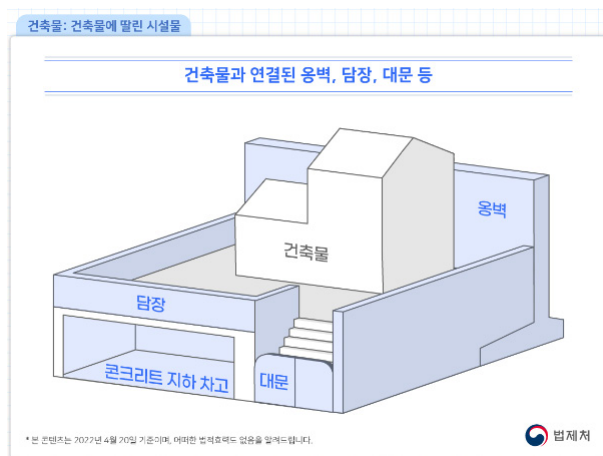


2)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안’ 지침

- 건축물안은 아래와 같이 법제처의 해석과 같이 옹벽, 담장, 대문 안을 뜻한다.
- 건축물의 실내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 지침

- 대상시설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실을 뜻한다.
- 공용부인 복도에서 들어가는 출입문과 실 내부의 실에도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 대상시설 내 기계실, 보일러실 등 관계자와 출입금지 지역인 특수목적의 실은 점자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 계단실 출입문의 표지판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자가 접근가능하므로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③ ‘출입문의 벽면’ 지침

- 점자표지판의 가로 설치 위치는 가급적 문 손잡이쪽에서 가깝게 설치하도록 한다.
- 불필요하게 문틀에서 이격하여 설치할 경우 문 손잡이 접근성이 떨어진다.

④ ‘1.5미터의 높이로’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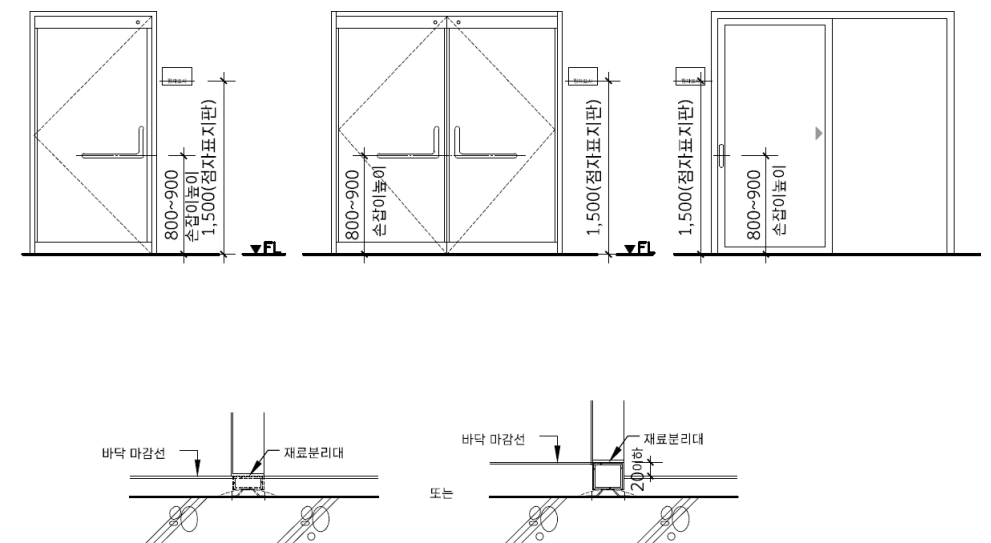
- 바닥면으로부터 점자표지판의 점자 표기 위치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1.5미터 높이에 설치함을 뜻한다.

⑤ ‘방이름을 표기’ 지침

- 실제 실명과 동일한 내용으로 점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내용을 가감하거나 불필요하게 생략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⑥ ‘점자표지판을 부착’ 지침

- “부착”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물체나 물건을 다른 물체나 표면에 붙이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스티커 방식이나 접착제로 붙이는 수준을 뜻할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벽면과 점자표지판을 결착하거나 체결하는 등의 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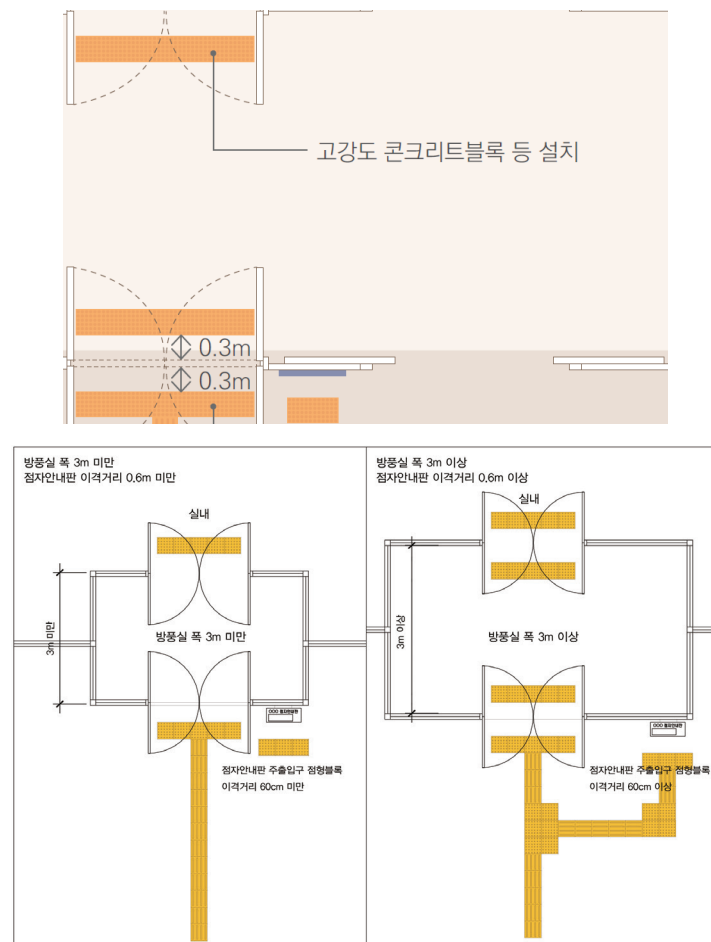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0.3미터 전면' 지침

- 주출입문의 내·외부에 문의 입면에서부터 0.3미터 이격하여 설치함을 뜻한다.
- 0.3미터에 대한 허용오차는 건축법 길이에 대한 허용오차 2%를 적용할 수 있다.
- 방풍실의 경우 내부 유효폭이 3미터 이상인 경우 내부에도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유효폭이 3미터 미만인 경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 단, 방풍실의 문의 방향이 바뀌거나, 문의 형태가 변하거나, 문의 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방풍실의 유효폭에 상관없이 내부에도 점형블록을 문폭 만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문의 폭만큼' 지침

- 실제 출입이 가능한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함을 뜻한다.
- 문이 폭이 1.0미터인 경우 3장설치, 양개문의 유효폭이 2.1미터인 경우 7장 설치한다.
- 양개형 주출입문 중 한쪽문을 고정문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손잡이를 제거한 경우 문이 아닌 벽으로 보고 해당 구간은 점형블록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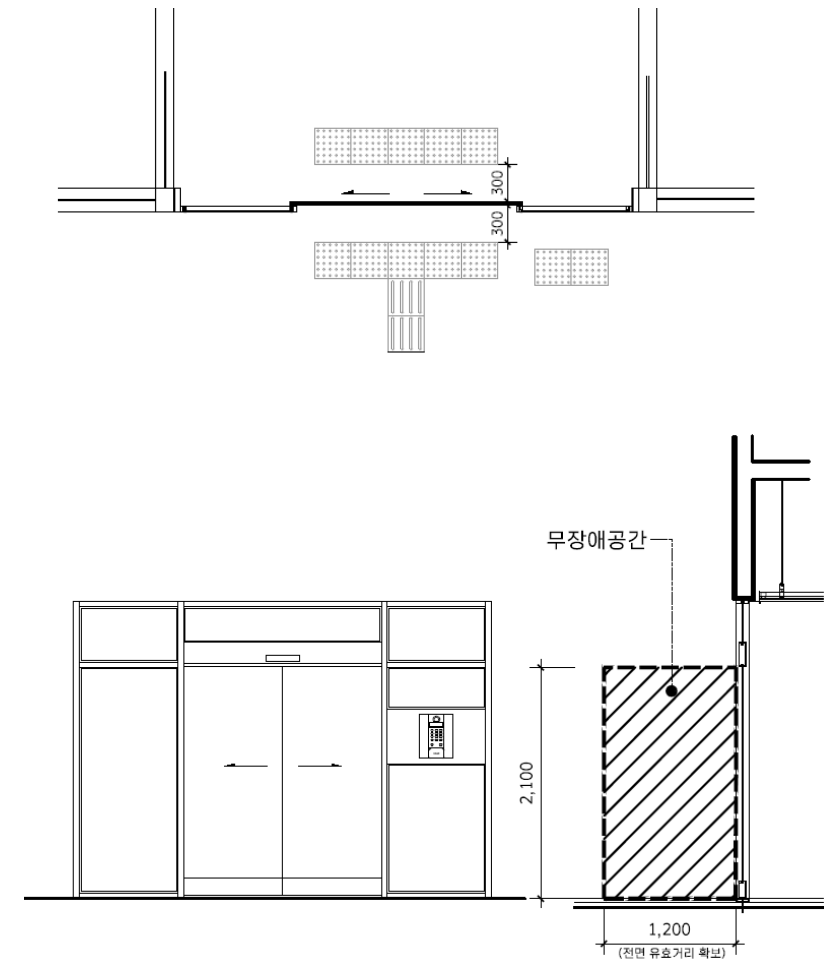


4)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추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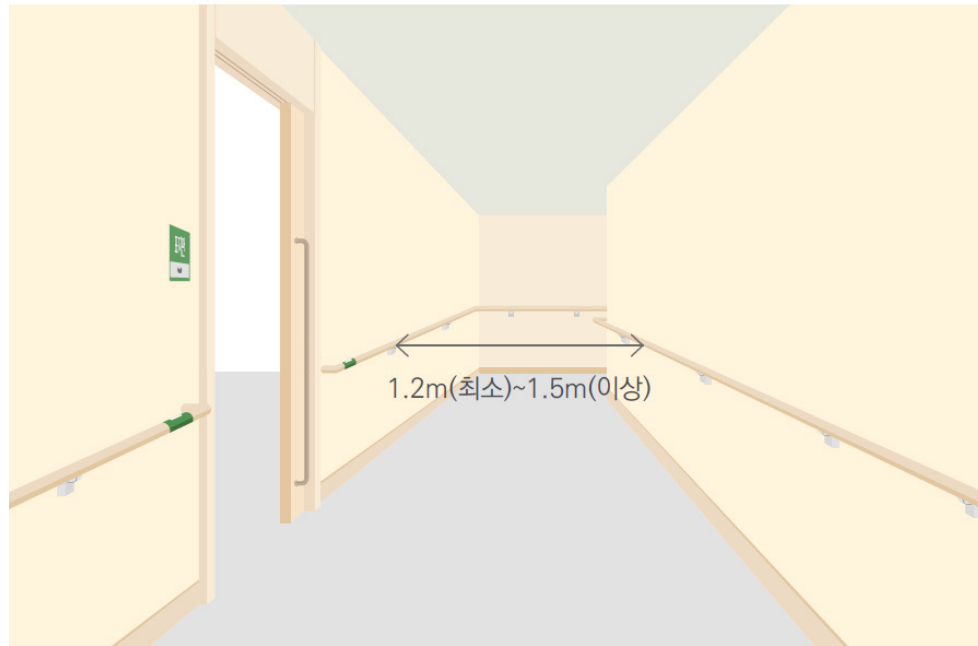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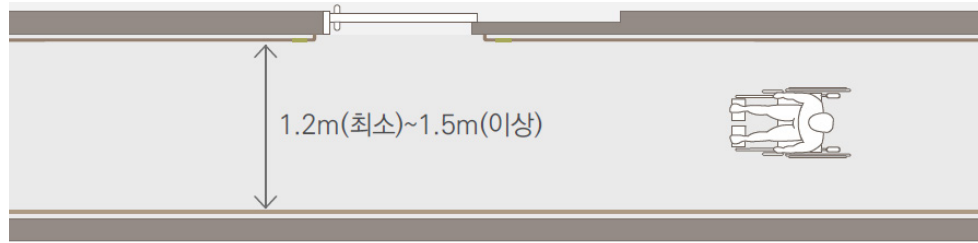
공공건물에 시설의 이용 특성을 위해 별도의 통화·호출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전면에 점형블록을 2장 설치한다.

'통화·호출장치' 지침

- 일부 대상시설은 운영 특성상 출입할때 통화 호출장치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므로, 통화 호출장치의 위치를 시각장애인에게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 특성상 이용자가 별도의 직원 호출벨이나 인터폰을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경우 호출벨이나 인터폰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4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기본 원칙

복도 및 통로는 건축물 내 이동을 위한 시설로 시각장애인 보행에 장애 요소가 없어야 한다.

나. 적용 범위

건축물 내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실내 공간과 베란다 등 옥외의 모든 통로와 복도를 적용 범위로 한다.

다. 설치 기준

1) 일반사항

복도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2)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 및 관람장
- (2) 집회장
- (3) 전시장, 동·식물원

라)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마) 의료시설

병원·격리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 (1)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 (2) 유치원
- (3)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4)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사) 노유자시설

- (1)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 (2)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 (3)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아)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자) 업무시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2)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3)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차)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카) 자동차관련시설

운전학원

타) 방송통신시설

- (1)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2)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파)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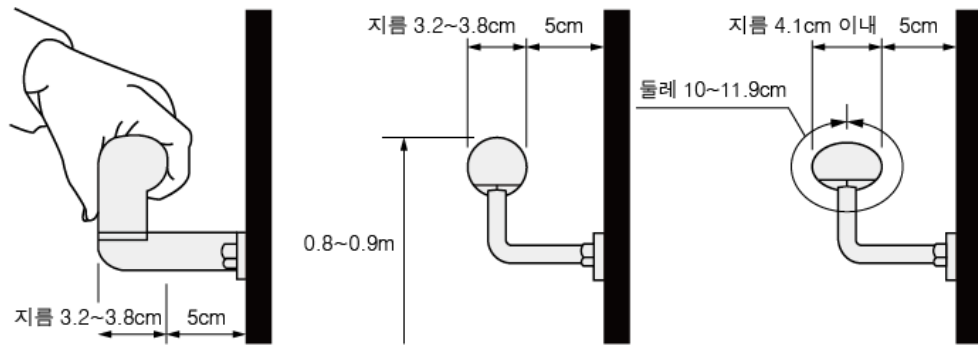
하) 장례식장

라. 세부 기준 및 지침

1) 손잡이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타원형 손잡이의 경우에는 손잡이의 긴지름을 4.1센티미터 이하로, 둘레를 10센티미터 이상 11.9센티미터 이하로 해야 하며 손잡이의 상단부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쉽게 잡을 수 있는 형태로 해야 한다.



다)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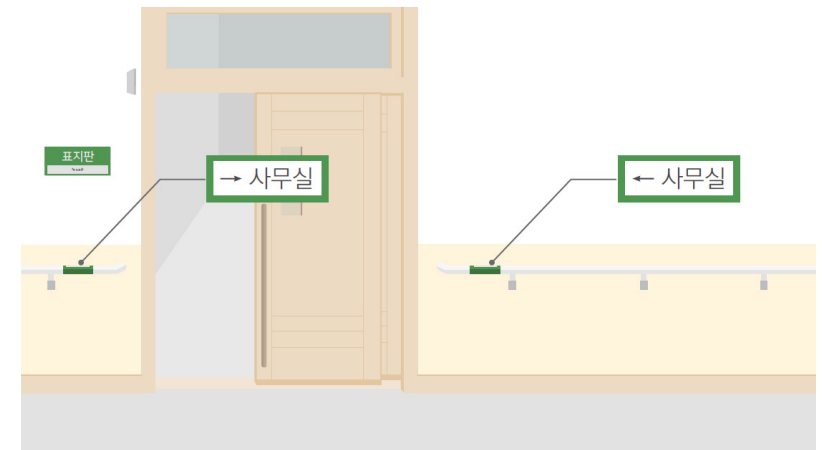
'5센티미터 내외' 지침

- 손잡이의 외곽면에서부터 벽면까지의 최단 거리가 5센티 정도임을 뜻한다.
- 간격이 너무 좁을 경우 자연스러운 손스침이 어렵고 너무 넓은 경우 손잡이 자체가 복도로 돌출되어 보행상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라)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점자표지판을 부착' 지침

- 점자표지판을 손잡이에 설치함을 뜻한다.
- “부착”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물체나 물건을 다른 물체나 표면에 붙이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스티커 방식이나 접착제로 붙이는 수준을 뜻할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손잡이와 점자표지판을 결착하거나 체결하는 등의 수준(리벳시공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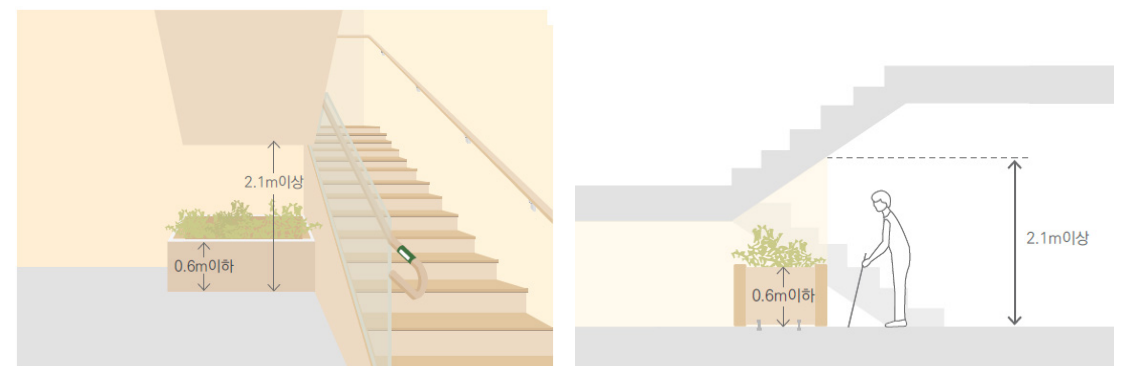


2) 보행장애물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0.6미터 이하' 지침

- 시각장애인이 흰지팡이를 통해 접근 방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높이 기준을 뜻한다.
- 접근 방지시설을 0.6미터보다 높게 설치한 경우 흰지팡이 보행 특성상 방지시설을 인지할 수 없다.
- 0.6미터 이하에 난간을 설치하더라도 하부 공간을 비우면 자칫 난간을 인지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로살이나 세로살로 하부공간을 채우거나, 보호벽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3)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추가 내용

가) 복도에는 높이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도가 1/18 초과인 경사로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작과 끝에 위치 정보를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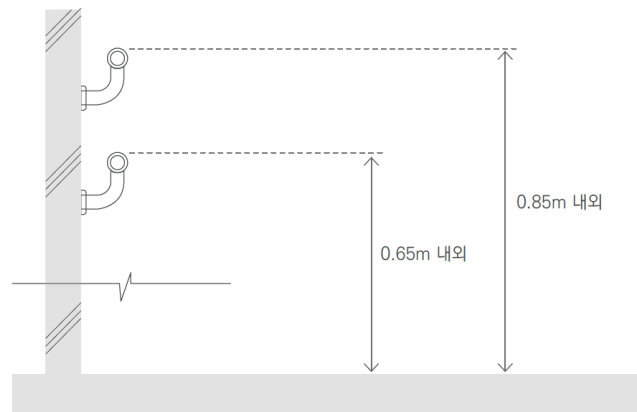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설치' 지침

-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고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손잡이를 하단과 상단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 각각 시작과 끝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단과 상단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 지침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주요 이용자가 신체 특성상 신장이 작은 경우에 0.8~0.9미터 높이의 손잡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어 바닥에서부터 높이 65센티 정도에 손잡이를 추가 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뜻한다.
- 손잡이 점자표지판은 상단인 85센티 높이의 손잡이와 하단 65센티 손잡이에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기본 원칙

계단은 층과 층을 연결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직 이동 시설로 보행할 때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고 층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적용 범위

건축물 내 전층(이용자 접근 가능 모든 층)을 연결한 계단(또는 계단실)을 적용 범위로 한다.

다. 설치 기준

1) 일반사항

- 가)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계단 보행을 위해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2)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 및 관람장
- (2) 집회장
- (3) 전시장, 동·식물원

라)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마) 의료시설

병원·격리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 (1)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 (2) 유치원
- (3)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4)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사) 노유자시설

- (1)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 (2)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 (3)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아)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자) 업무시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2)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3)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차)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카) 자동차관련시설

운전학원

타)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파)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하) 장례식장

라. 세부 기준 및 지침

1) 디딤판과 철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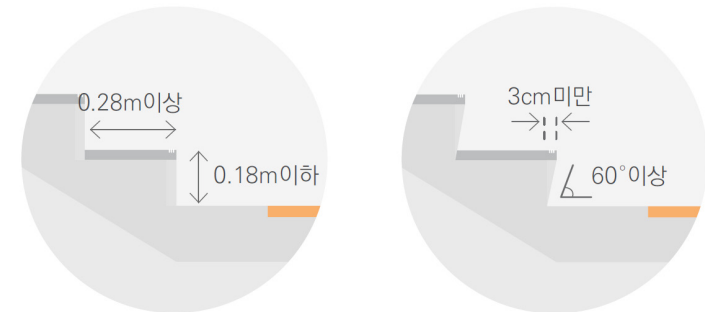
가) 계단에는 철편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철편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편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디딤판의 너비' 지침

- 계단코에서 철편까지의 길이를 뜻한다.
- 건축물 내의 디딤판을 불필요하게 길게한 경우 시각장애인에게는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다) 디딤판의 끝부분에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철편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가)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① '손잡이의 양끝부분' 지침

- 계단 층의 시작과 끝부분의 수평손잡이를 뜻한다.
- 점자표지판의 세부 설치 위치는 마지막 계단코에서부터 계단의 점형블록의 사이 수평손잡이에 설치하도록 한다.

② '굴절부분'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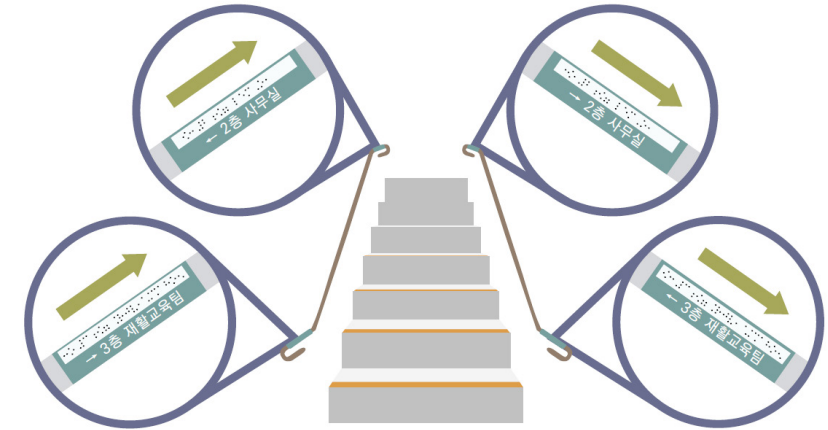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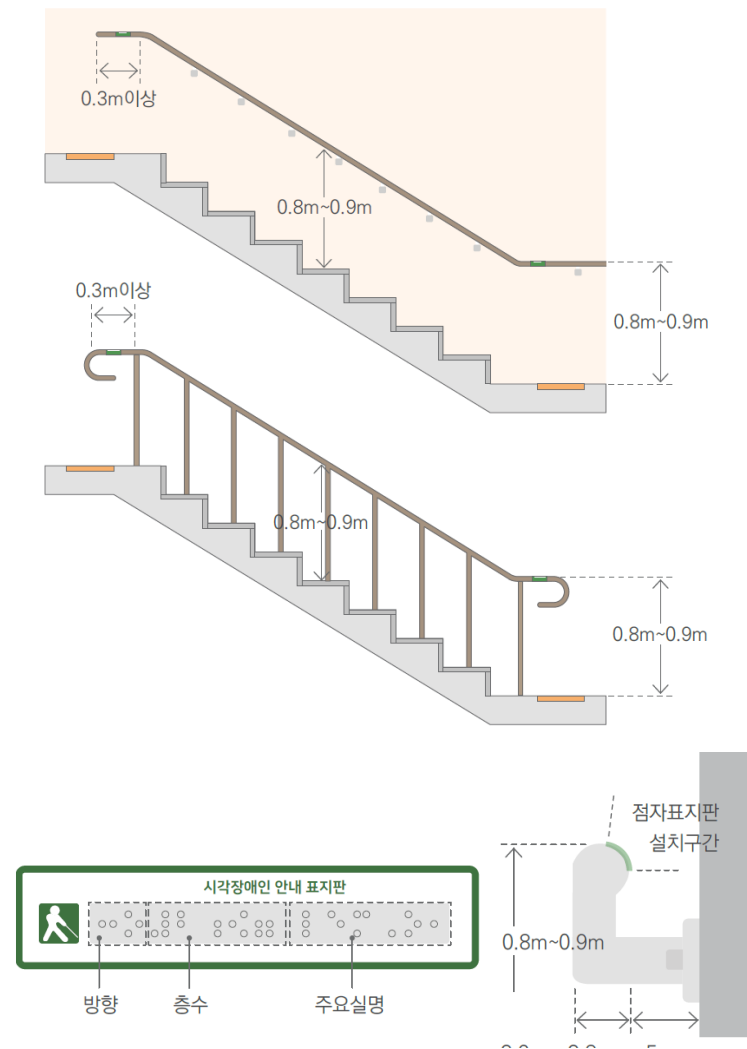
-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꺾임을 의미하나 경사로 참이나 단순히 손잡이 방향이 바뀌는 부분에는 점자표지판 설치를 생략한다.
- 상기 지침에도 불구하고 굴절부분에서 새로운 목적지 방향이 발생하거나 분기점이 있는 경우에는 굴절부분에 새로운 목적지 정보나 분기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설치하도록 한다.

③ '층수·위치 등' 지침

- 계단 보행할 때 비시각장애인이 확인할 수 있는 안내정보에 준한 내용을 표기함을 뜻한다.
- 통상 '화살표 + 층수 + 주요실 (방면)'으로 계단 손잡이 점자표지판의 문구를 구성한다.
- 위치 정보없이 단순히 '올라감', '내려감', '계단' 등만을 표기한 경우 표지판으로서의 기능이 없으므로 표기하지 않는다.

④ '점자표지판을 부착' 지침

- 점자표지판을 손잡이에 설치함을 뜻한다.
- "부착"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물체나 물건을 다른 물체나 표면에 붙이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스티커 방식이나 접착제로 붙이는 수준을 뜻할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손잡이와 점자표지판을 결착하거나 체결하는 등의 수준(리벳시공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촉지방향 → 손잡이와 마주보고 서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3) 재질과 마감

가)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으로 미끄럼방지재로 마감' 지침

- 계단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논슬립을 설치함을 뜻한다.
- 저시력 시각장애인 등 잔존시력이 있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계단을 보행할 수 있도록 줄눈과 미끄럼방지재는 시인성을 확보한 것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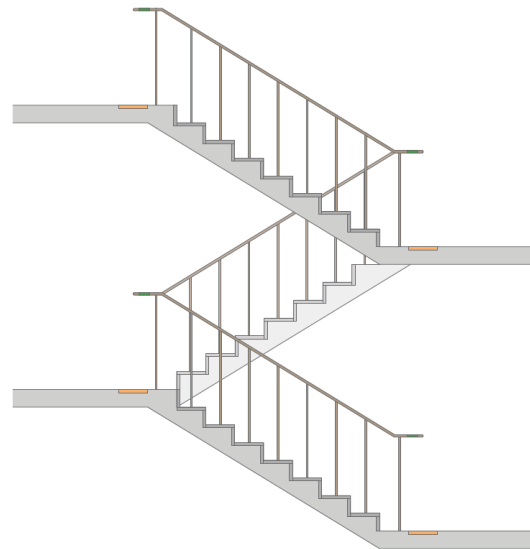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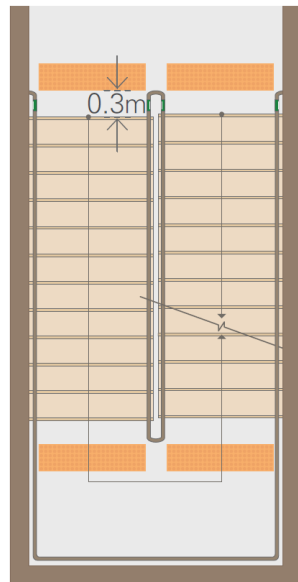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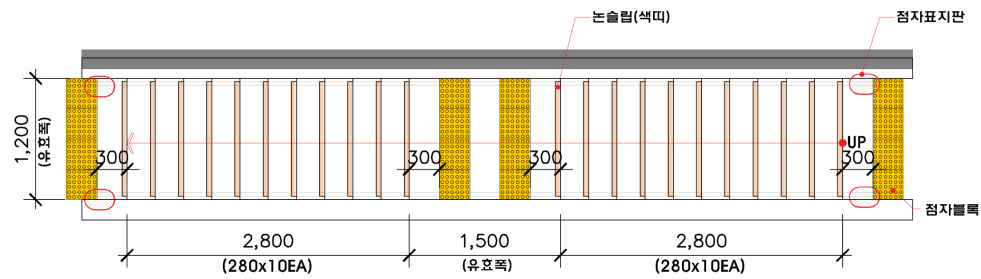
나)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 지침

- 계단의 시작 지점, 계단참, 계단의 끝지점에 점형블록을 설치함을 뜻한다.
- 계단부에 1개의 단이 있을 경우, 계단참에 별도의 단이 있는 경우, 참이 ‘ㄱ’자형으로 꺾이는 경우 등에도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 지침

- 전면 계단이 시작과 끝남을 알려줄 수 있도록 계단의 통과 유효폭만큼 설치함을 뜻한다.
- 계단에 진입할 때 중앙난간, 기둥이 있는 경우는 그 폭을 제외하고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
- 계단이 유효폭이 1.2미터인 경우 4장 설치, 유효폭이 2미터인 경우 6장 설치한다.
- 계단참이 ‘ㄱ’자형으로 꺾이는 경우 양방향 계단 폭만큼 설치할 경우 서로 간섭이 되므로 점형블록도 ‘ㄱ’자 형으로 계단의 0.3미터 전면에 설치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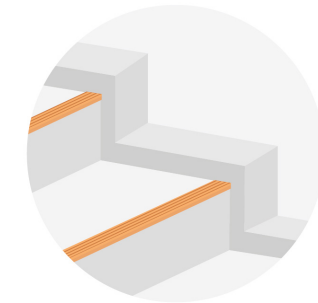


4) 기타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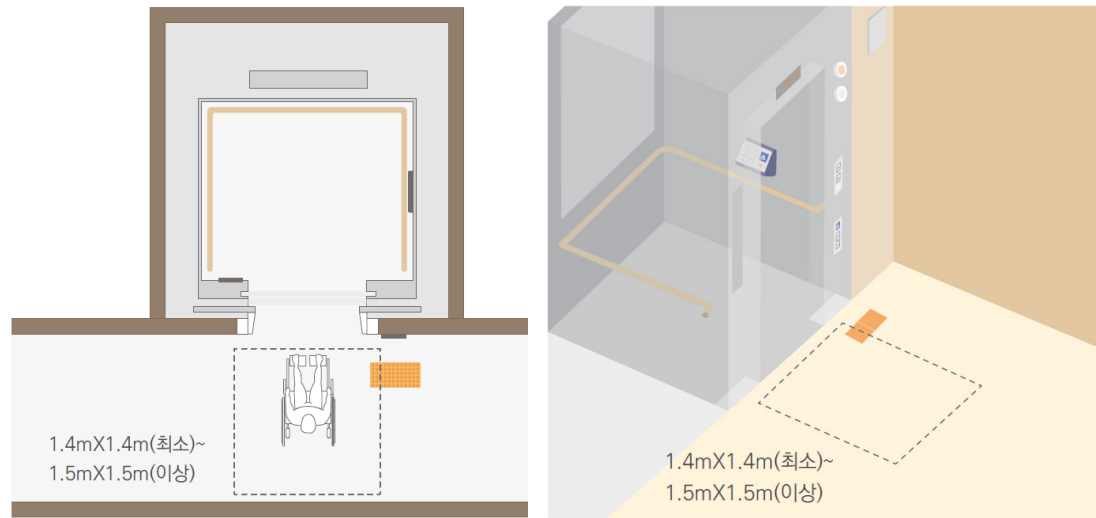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계단코의 색상’ 지침

- 저시력인이나 비장애인 등 계단을 보행하는 사람이 디딤판의 단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단코 부분을 계단 바닥마감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 계단 시작과 끝부분의 계단코에는 황색의 사용은 자칫 점자블록과 혼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6 장애인용 승강기



가. 기본 원칙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층간 수직이동 수단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적용 범위

건축물 내 전층(이용자 접근 가능 모든 층)의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승강기를 적용 범위로 한다.

다. 설치 기준

1) 일반사항

가. 시각장애인이 승강기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점형블록과 도착 안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각장애인이 쉽게 승강기를 조작하고 음성 등으로 쉽게 동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2)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 및 관람장
- (2) 집회장
- (3) 전시장, 동·식물원

라)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마) 의료시설

병원·격리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 (1)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 (2) 유치원
- (3)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4)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사) 노유자시설

- (1)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 (2)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 (3)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아)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자) 업무시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2)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3)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차)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카) 자동차관련시설

운전학원

타)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파)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하) 장례식장



라. 세부 기준 및 지침

1) 이용자 조작설비

가)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버튼식' 지침

- 손가락으로 눌러서 동작시킴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조작설비의 형태를 뜻한다.
- 단순 터치나 스침이 아닌 누른다는 물리적인 버튼 입력 방식이어야 하며 누구나 쉽게 눌러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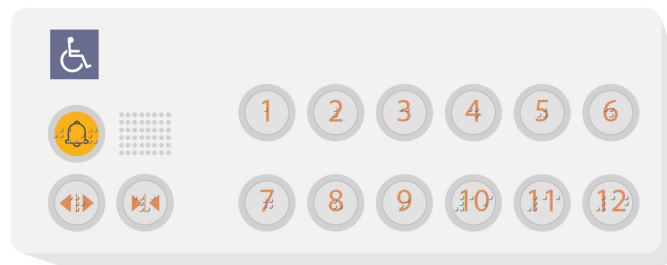
②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 지침

- 승강기 호출 및 조작을 위한 모든 버튼에 표기된 정보를 점자로 표기하여야 함을 뜻한다.
- 버튼별 표기하여야 하는 점자의 문구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내용은 버튼에 표기되어 있는 문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점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 상하호출버튼: 위방향 화살표 '상', 아래방향 화살표 '하'
 - 조작반버튼: 열기버튼 '개', 닫기버튼 '폐', 호출버튼 '호출', 각 층버튼 '층 숫자' 표기
 - 기타버튼: 버튼의 목자와 동일하게 점자 표기

나)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조작반·통화장치 등' 지침

- 승강대기 공간의 상하 호출버튼, 승강기 내부의 가로 및 세로조작반의 모든 조작설비를 뜻한다.
- 승강기 아이디 점자표기 등도 세로조작반 상단에 설치하도록 한다.
- 상하 호출버튼 상단에 해당 층정보 점자를 표기하여 시각장애인에게 현재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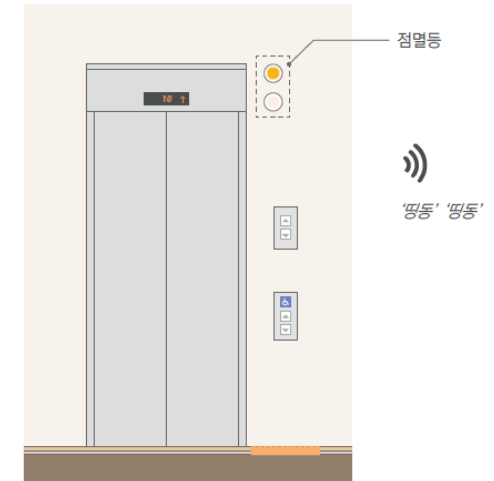


2) 기타 설비

가)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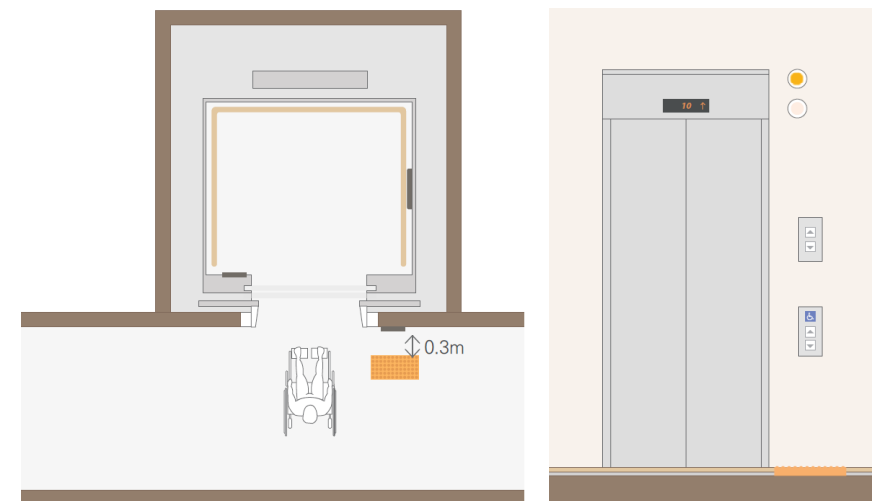
- 승강대기 공간에서 승강기의 도착을 알릴 수 있도록 상하 호출버튼 상부에 별도의 점멸등을 설치하고 도착음이 출력되어야 함을 뜻한다.
- 점멸등의 경우 상향등과 하향등을 구분 설치하여야 하고, 도착음은 승강대기 공간에서 들릴 수 있는 정도 음향이 출력되어야 한다.
- 보통 도착음은 별도의 출력 설비가 승강대에 설치되지 않고 승강기 자체에서 출력되는 방식으로 소리가 승강대기 공간에서 잘 들릴 수 있도록 건축마감을 고려하도록 한다.



나)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 지침

- 시각장애인에게 승강기 상하호출버튼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호출버튼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점형블록은 2장 설치하도록 한다.
- 0.3미터 전면 치수는 호출버튼이 설치된 벽면에서부터 점형블록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다)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토글방식' 지침

- 하나의 버튼을 누를 때 활성화되고 다시 누르면 비활성화되는 방식을 뜻한다.
- 누구나 쉽게 하나의 버튼을 누르면서 쉽고 간단히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 지침

- 관통형 승강기나 승강기 측면에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승강기의 경우를 뜻한다.
- 안내 음성은 '층별로 출입구 위치가 다릅니다.' 또는 '뒤쪽 출입문이 열립니다.' 등 열리는 문이 다른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한다.

마)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 지침

- 승강기 출입문이 열리는 위치, 승강기 호출버튼의 전면 점형블록 위, 승강기 내부 세로조작반과 가로조작반의 각 위치에서의 조도를 뜻한다.

② '150LX 이상' 지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에 따라 보통 작업은 150LX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지침

- 일반 에스컬레이터가 아닌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이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뜻한다.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설치 사례가 없어 일반 에스컬레이터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지침을 설명하도록 한다.

가. 기본 원칙

에스컬레이터는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계단을 구동시켜 층간 이동하는 시설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하는 시설이므로 사용자의 이용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계단과 마찬가지로 층별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적용 범위

건축물 내 이용자 접근 가능한 에스컬레이터를 적용 범위로 한다.

다. 설치 기준

1) 일반사항

- 가) 시각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에 안전하게 접근하여 탑승하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위치·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정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2)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 및 관람장
- (2) 집회장
- (3) 전시장, 동·식물원

라)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마) 의료시설

병원·격리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 (1)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 (2) 유치원
- (3)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4)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사) 노유자시설

- (1)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 (2)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 (3)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아)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자) 업무시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2)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3)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차)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카) 자동차관련시설

운전학원

타)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파)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하) 장례식장

라. 세부 기준 및 지침

1) 손잡이

가)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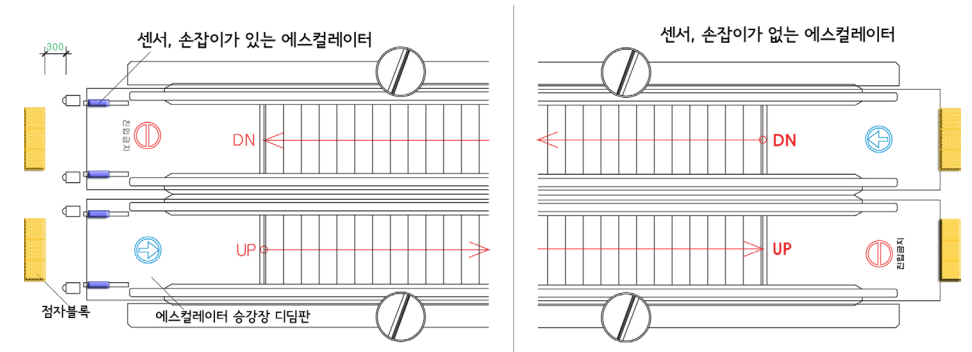
다)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①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 지침

- 설치 높이가 아닌 진행방향으로 1미터를 뜻한다
- 수평고정 손잡이는 손잡이 관련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점자표지판을 부착' 지침

- 수평고정손잡이가 시작하는 위치에 설치함을 뜻한다.
- 점자표지판을 손잡이에 설치함을 뜻한다.
- “부착”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물체나 물건을 다른 물체나 표면에 붙이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스티커 방식이나 접착제로 붙이는 수준을 뜻할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손잡이와 점자표지판을 결착하거나 체결하는 등의 수준(리벳시공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추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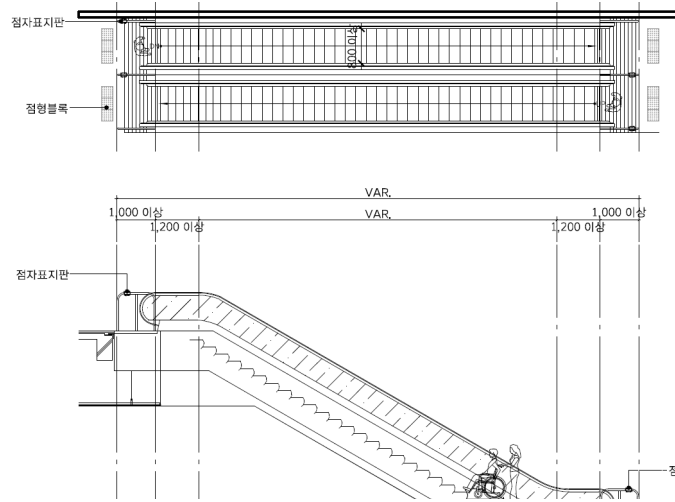
에스컬레이터의 **진입쪽 만큼** 점형블록을 **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진입폭 만큼' 지침

- 에스컬레이터 트렌치 폭만큼이 아닌 디딤판의 폭만큼 설치함을 뜻한다.
- 점형블록의 설치 개수는 디딤판보다 작은 30센티미터의 배수 만큼을 설치하도록 한다.(80센티미터의 폭인 경우 2장, 90센티미터의 폭인 경우 3장 설치 등)

② '전면'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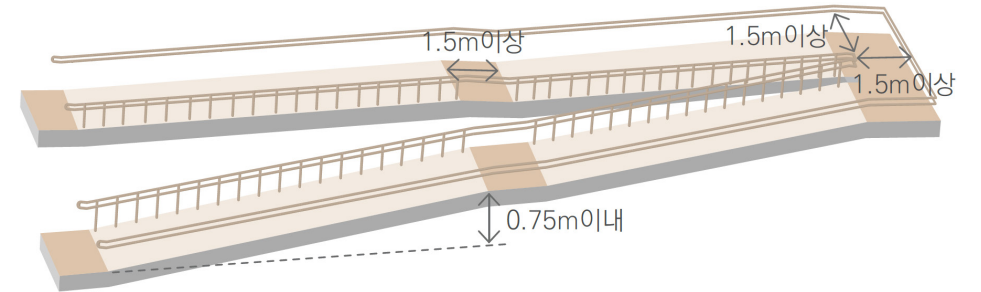
- 에스컬레이터 센서 지주가 있는 경우 지주 사이의 연속선상에서부터 0.3미터 이격 설치하고, 지주가 없는 경우 트렌치에 이격없이 설치함을 뜻한다.
- 에스컬레이터의 철제 트렌치 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지 않는다.



8 경사로

'경사로' 지침

- 층과 층을 연결하는 수직이동 수단으로써의 경사로를 뜻한다.



가. 기본 원칙

경사로는 층과 층의 높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 휠체어사용자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적용 범위

건축물 내 층간 연결 경사로 1개소를 적용 범위로 한다.

다. 설치 기준

1) 일반사항

- 가) 위치·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평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시각장애인이 경사로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2)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 및 관람장
 - (2) 집회장
 - (3) 전시장, 동·식물원



라)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마) 의료시설

병원·격리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 (1)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 (2) 유치원
- (3)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4)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사) 노유자시설

- (1)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 (2)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 (3)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아)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자) 업무시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2)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3)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차)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카) 자동차관련시설

운전학원

타)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파)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하) 장례식장

라. 세부 기준 및 지침

1)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① ‘양끝부분’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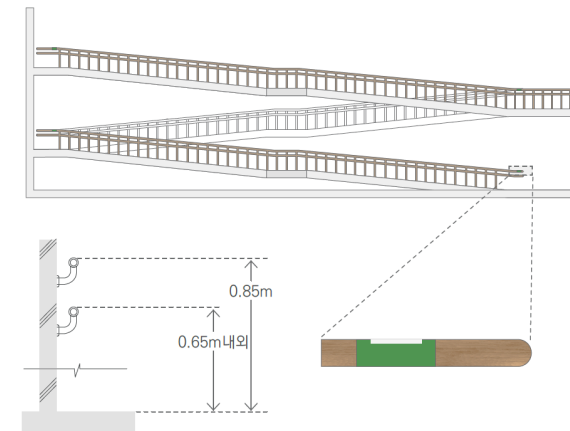
- 양끝부분은 경사로 시작 지점의 손잡이 양측면과 층 도달지점의 양측면을 뜻한다.

② ‘굴절부분’ 지침

-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꺾임을 의미하나 경사로 참이나 단순히 손잡이 방향이 바뀌는 부분에는 점자표지판 설치를 생략한다.
- 위 지침에도 불구하고 굴절부분에서 새로운 목적지 방향이 발생하거나 분기점이 있는 경우에는 굴절부분에 새로운 목적지 정보나 분기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설치하도록 한다.

③ ‘점자표지판을 부착’ 지침

- 점자표지판을 손잡이에 설치함을 뜻한다.
- “부착”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물체나 물건을 다른 물체나 표면에 붙이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스티커 방식이나 접착제로 붙이는 수준을 뜻할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손잡이와 점자표지판을 결착하거나 체결하는 등(리벳시공 등)의 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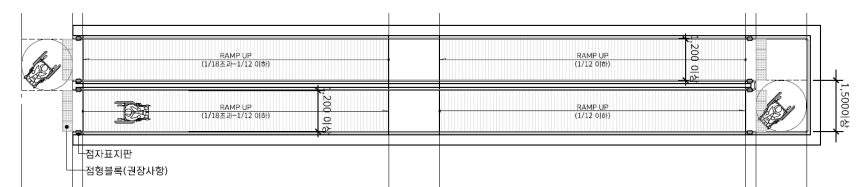


2)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추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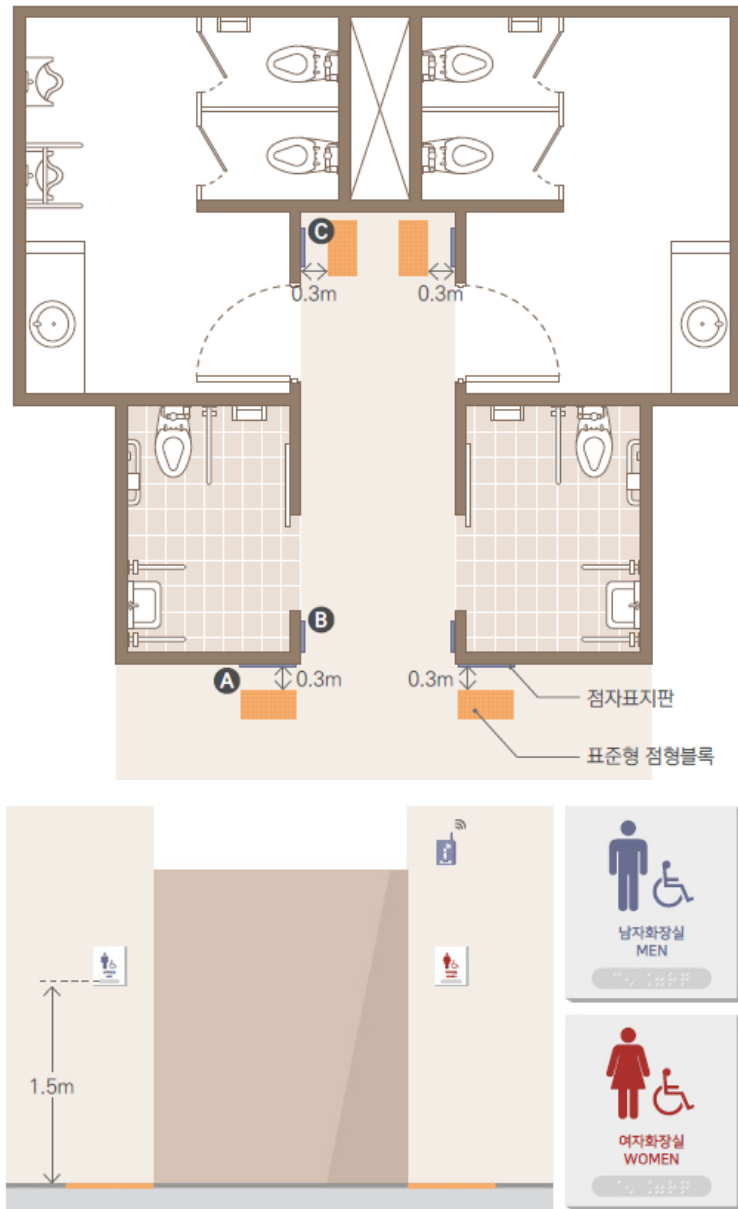
경사로가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경사로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로가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 지침

- 경사로 시작과 끝, 참에 경사 발생지점과 끝지점 기준 전면 0.3미터에 경사로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함을 뜻한다.
- 층과 층의 수직이동수단으로서의 경사로는 경사 시작과 끝, 참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
- 복도의 높이차 제거를 위한 복도 경사로로서 경사로만 단독으로 설치된 경우 1/12~1/18의 경사로는 경사로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1/18보다 완만한 경사로는 점형블록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계단과 경사로가 같이 설치된 경우 경사로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를 생략한다.



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기본 원칙

화장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진입에서부터 화장실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위생적이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보행 특성상 일반화장실을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남녀의 구분이 명확하여야 한다.

나. 적용 범위

건축물 각 층별 일반 남녀화장실 각 1개소를 적용범위로 한다. 단 해당층에 일반화장실이 없는 경우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적용범위로 한다.

다. 설치 기준

1) 일반사항

- 가.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나. 시각장애인이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표지판과 점형블록을 올바른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2) 공중화장실
 -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 및 관람장
 - (2) 집회장
 - (3) 전시장, 동·식물원
- 라) 판매시설
 -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마) 의료시설
 - 병원·격리병원
- 바) 교육연구시설
 - (1)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 (2) 유치원
 - (3)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4)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사) 노유자시설

- (1)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 (2)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 (3)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아)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자) 운동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차) 업무시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2)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3)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카)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타) 공장

파) 자동차관련시설

운전학원

하) 방송통신시설

- (1)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2)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거)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너)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더) 관광휴게시설

- (1)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2) 휴게소

러) 장례식장

라. 세부 기준 및 지침

1) 화장실 일반사항

가) 재질과 마감

- (1) 화장실(장애이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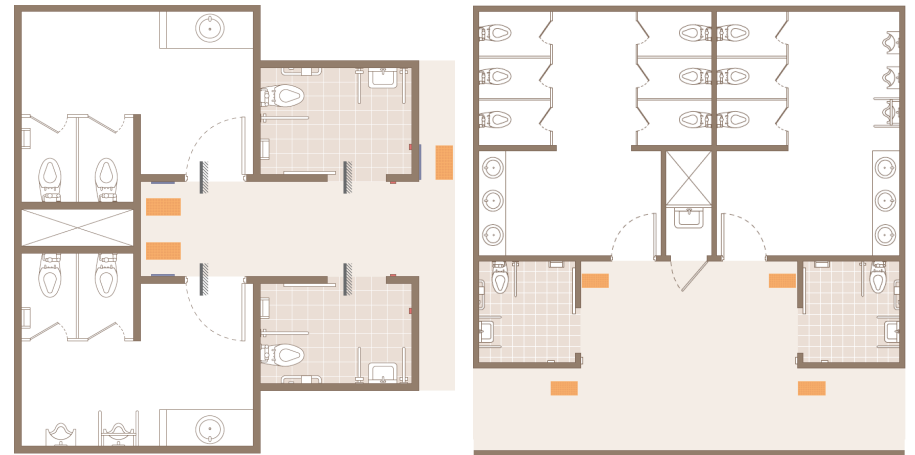
① '장애이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

지침

-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하 장애이용 화장실)이 아닌 일반 화장실에 설치함을 뜻한다.
- 상기 지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하나의 층에 화장실이 장애이용 화장실만 있는 경우에는 장애이용 화장실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0.3미터 전면' 지침

- 화장실 점자표지판이 설치된 벽면에서부터 0.3미터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함을 뜻한다.
- 점형블록은 2장을 남녀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타 설비

- (1) 화장실(장애이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수 있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 지침

- 화장실의 남녀 구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남자화장실 출입구(문) 벽면에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출입구(문) 벽면에는 '여자화장실'이라고 각각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을 뜻한다.
- 설치 높이는 점자의 표기 위치가 바닥면에서부터 1.5미터가 되도록 설치하고 설치 위치는 출입구(문)에서 5센티미터 간격 이내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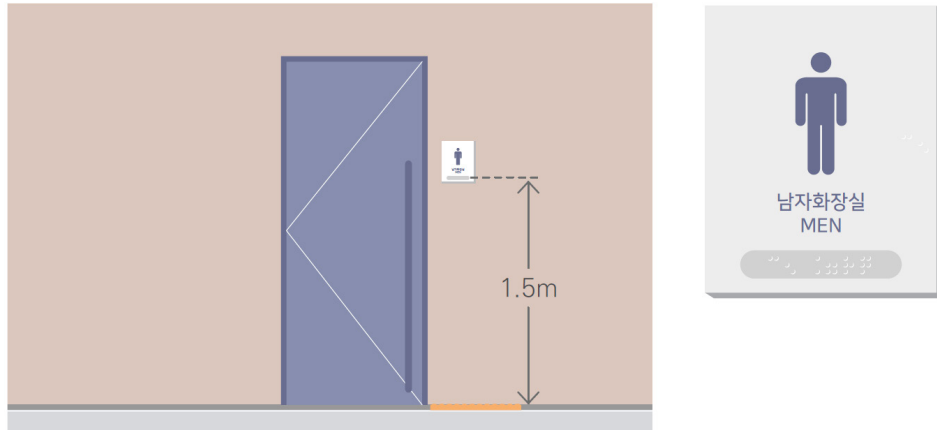
②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 지침

- 건축물 하나의 층에 화장실이 장애이용 화장실만 있는 경우에는 장애이용 화장실 출입구(문) 벽면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남녀 구별하여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남자용과 여자용 화장실의 구조와 배치에 따라 화장실 위치 안내를 위한 점자안내판 또는 위치 안내 표지판(좌측 남자화장실, 우측 여자화장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점자표지판을 부착' 지침

- “부착”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물체나 물건을 다른 물체나 표면에 붙이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스티커 방식이나 접착제로 붙이는 수준을 뜻할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벽면과 점자표지판을 결착하거나 체결하는 등의 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 지침

- 십자형 핸들 등 돌리는 수도꼭지는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사용하지 말아야 함을 뜻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안내표시' 지침

-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잔존시력이 있는 저시력인의 화장실의 남녀 구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시를 설치하여야 함을 뜻한다.
- 안내표시는 남녀의 색상 구분, 화장실용 점자안내판 설치, 돌출표지판 등이 해당한다.

② '음성유도장치를 설치'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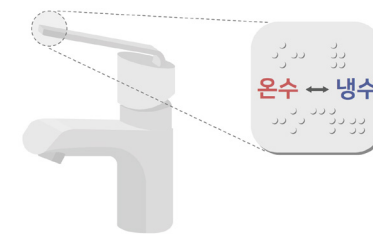
- 화장실의 위치안내와 남녀구별을 음성으로 안내하기 위해 음성유도기를 설치해야 함을 뜻한다.
- 건축물 내 모든 남녀 화장실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남녀화장실의 배치에 따라 가운데 1개소 설치하여 좌측과 우측 남녀화장실을 안내하거나 남녀화장실 출입문 상단에 각 1개를 설치하도록 한다.
- 단 남녀화장실의 출입문이 가까운 경우 출력되는 음성이 중첩될 수 있으므로 한쪽 출입문에만 설치하여 음성으로 위치를 안내할 수 있다.

2) 세면대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 지침

- 방향구분에 따라 냉수와 온수가 구분하여 나오는 수도꼭지는 온수와 냉수의 방향 정보를 알려주어야 하므로 냉·온수를 표기하여야 함을 뜻한다.
- 설치 위치는 레버의 상단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레버 방향이 좌우 방향이 아니거나 특수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점자 표기를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점자를 표기한다.
- 표지판을 별도로 제작하여 설치할 때 습윤상태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특수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접착이 어렵거나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냉·온수 점자 일체형 수도꼭지를 사용하도록 한다.



3)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추가 내용

가) 세면대 냉·온수 점자표시는 **수도꼭지 레버에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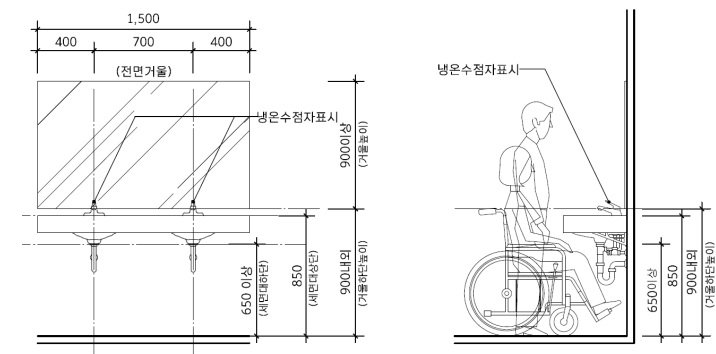
'수도꼭지 레버에 표기' 지침

- 설치 위치는 레버의 상단에 설치함을 뜻한다.
- 레버 방향이 좌우 방향이 아니거나 특수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점자 표기를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점자를 표기한다.

나) **일반화장실과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의 세면대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를 표시**한다.

'일반화장실과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의 세면대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를 표시' 지침

- 일반화장실 내 모든 수도꼭지가 냉·온수의 레버식인 경우 모든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를 표기해야 함을 뜻한다.
- 또한 장애인용 화장실 내 세면대의 수도꼭지가 냉·온수의 레버식인 경우도 냉·온수 점자를 표기해야 함을 뜻한다.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가. 기본 원칙

시각장애인이 욕실 이용시 냉·온수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적용 범위

건축물 내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욕실 1개소를 적용 범위로 한다.

다. 설치 기준

1) 일반사항

욕실은 시각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라. 세부 기준 및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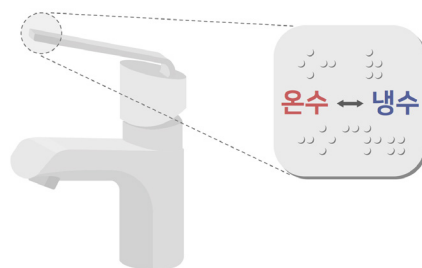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 지침

- 십자형 핸들 등 돌리는 수도꼭지는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사용하지 말아야 함을 뜻한다.

②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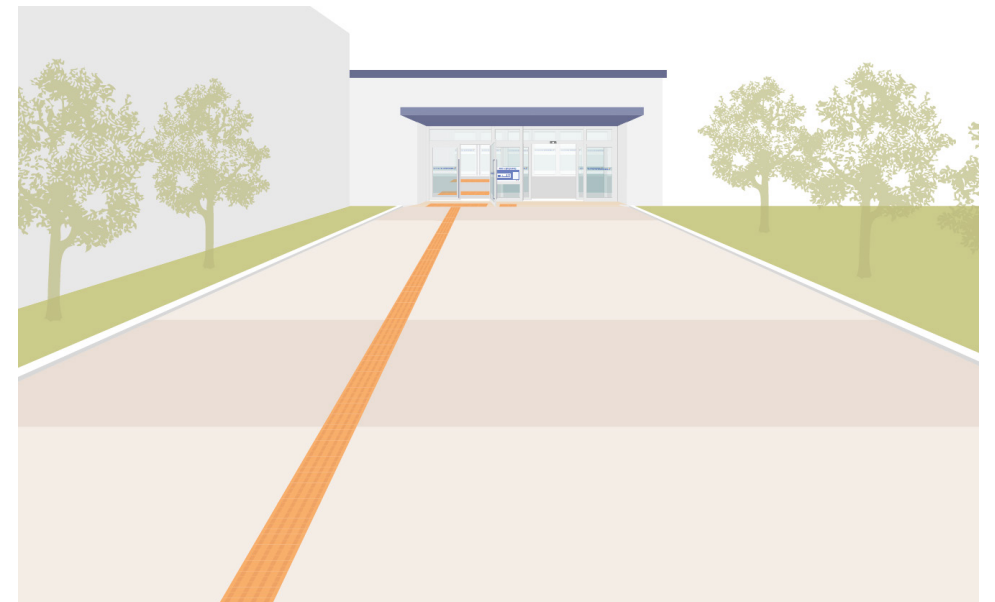
- 방향구분에 따라 냉수와 온수가 구분하여 나오는 수도꼭지는 온수와 냉수의 방향 정보를 알려주어야 하므로 냉·온수를 표기하여야 함을 뜻한다.
- 설치 위치는 레버의 상단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레버 방향이 좌우 방향이 아니거나 특수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점자 표기를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점자를 표기한다.
- 표지판을 별도로 제작하여 설치할 때 습윤상태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특수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접착이 어렵거나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냉·온수 점자 일체형 수도꼭지를 사용하도록 한다.



11 점자블록

‘점자블록’ 지침

- 블록 표면에 점과 선을 돌출시켜 시각장애인이 흰지팡이와 발의 촉감으로 감지하여 직선 보행과 경고, 방향 전환을 돕는 편의시설을 뜻한다.
- 11의 점자블록은 점자블록의 종류와 규격, 기능과 장소별 설치 지침 등 점자블록의 일반적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 또한 안내시설로써 접근로 상의 선형블록 설치에 대한 지침도 기술하고 있다.



가. 기본 원칙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접근성 확보를 위해 접근로, 주출입문, 계단, 승강기, 화장실 등의 전면 바닥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적용 범위

- 1) 건축물 내 주출입문, 계단, 승강기, 화장실 등 주요시설의 전면 바닥뿐만 아니라 접근로 상의 계단과 경사로 전면(경사가 급한 경우에 한함)에도 적용 범위로 한다.
- 2) 건축물 대지의 경계선에서부터 시작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문) 전면까지의 진입동선을 점자블록 설치의 적용 범위로 하며, 대지면적 내 여러 건축물이 독립적으로 배치된 경우는 각 건축물의 주출입문까지로 한다.



다. 설치 기준

1) 일반사항

- 가) 점자블록은 건축물 내 주출입문, 계단, 승강기,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의 전면 바닥에 시각장애인의 보행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나)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지침

- 접근로 상의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뜻한다.
- 주출입문, 계단, 승강기, 화장실 등의 점자블록 설치 의무 여부는 각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의무 여부를 따른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2) 공중화장실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 및 관람장
- (2) 전시장, 동·식물원

라) 의료시설

병원·격리병원

마) 교육연구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바)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사) 업무시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2)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아)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자) 장례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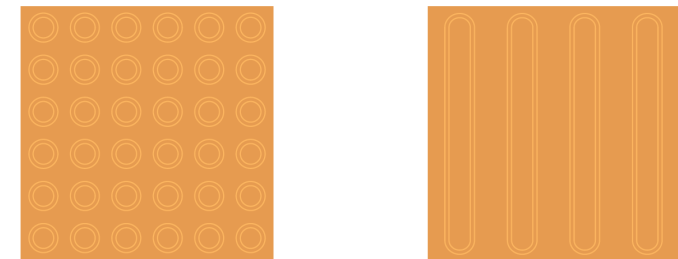
라. 세부 기준 및 지침

1) 규격 및 색상

- 가)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 지침

- 점의 형태가 돌출된 점형블록은 보행의 시작과 끝, 굴절등 방향 전환, 경고의 기능이 있는 점자블록을 뜻한다.
- 선의 형태가 돌출된 선형블록은 직선 보행의 기준선으로 유도의 기능이 있는 점자블록을 뜻한다.



- 나)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 지침

- 점자블록의 크기는 가로세로 30센티미터로 규격이 정해져 있음을 뜻한다.
- 가로 세로의 길이에 대한 허용 오차는 ± 2.0밀리미터 이다

- 다)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라)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 ± 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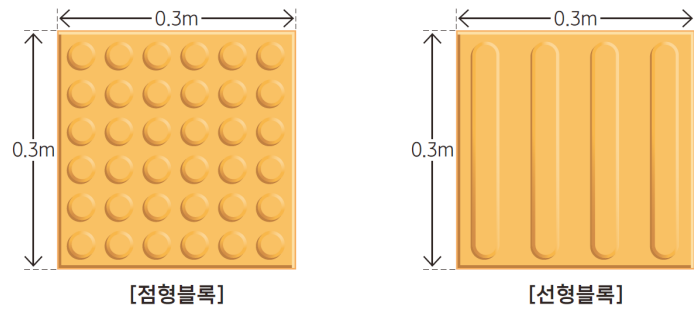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 지침

- 현행 세부기준에는 반구형과 원뿔절단형 또는 혼합배열형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반구형의 경우 최상단 돌출부가 평탄하지 않고 굴곡져 있어, 휠체어사용자, 유모차, 구두를 신은 여성 등의 보행에 불편이 있어 원뿔절단형 점형블록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마)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바)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사)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① ‘원칙적으로 황색’ 지침

- ‘원칙적으로’의 의미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바닥재의 색상이 황색 계열인 경우에 한함을 뜻한다.
- 주간과 야간에 주목성이 높은 황색(Safety Yellow)을 사용하여야 함을 뜻한다.

② ‘다른 색상’ 지침

- 점자블록은 미관과 디자인 요소가 아닌 주목성과 돌출된 점과 선이 있는 기능성 블록으로 바닥 마감 색상 설정에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상기 지침에도 불구하고 바닥재가 황색 계열인 경우에 한하여 점자블록을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 다른 색상은 흰색, 녹색, 청색 등으로 할 수 있으나 흑색이나 회색 계열은 바닥의 패임 또는 함몰부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다.

아)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외에 설치’ 지침

- 접근로나 주출입구의 내·외부, 접근로상의 계단 등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은 눈이나 비 또는 습도 등으로 인해 표면이 습윤상태가 되기 쉽기 때문에 눈슬립 처리되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함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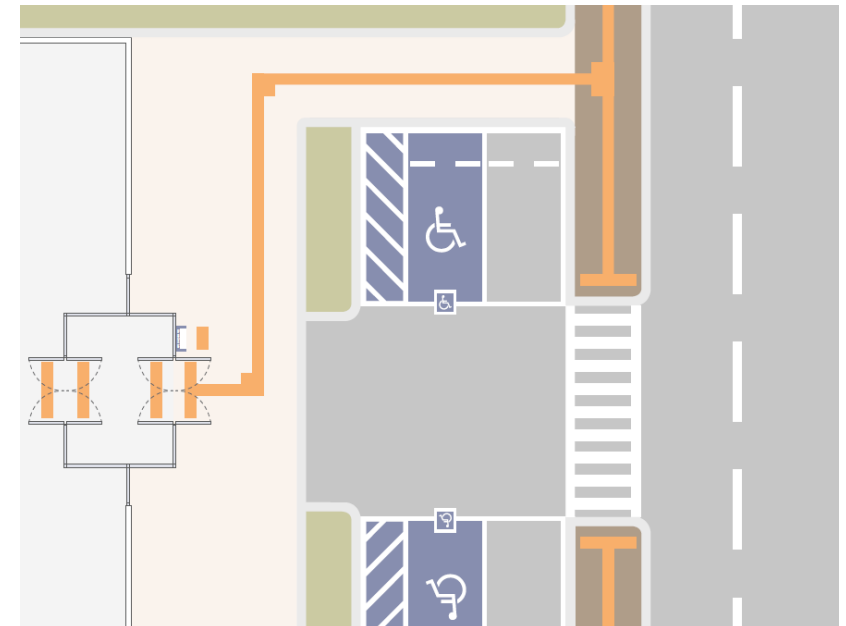
2) 설치방법

가)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이용 승강기·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 지침

- 접근로와 인근 도로 경계부에서 주출입문 전면의 점형블록까지 선형블록을 연계 설치하여야 함을 뜻한다.
- 선형블록의 유도 설치 위치는 접근로의 가운데로 하며, 선형블록의 외곽선 기준 0.6미터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 지침

- 점자블록의 돌출부 아래의 표면과 바탕재 표면이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함을 뜻한다.
- 점자블록의 돌출부가 아닌 본체의 두께 만큼을 파내고 시공하여 동일한 높이를 확보함은 물론 내구성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②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 지침

-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바닥재가 매립시공이 불가능한 재질인 경우나 문화재인 경우 등을 뜻한다.
- 단순 접착제 부착식으로 설치할 경우 망실되거나 들뜸과 떨어지는 등 유지관리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피스(Screw), 앵커볼트(Anchor bolt) 등으로 결착 시공하도록 한다.
- 신축인 경우 부착식으로 설치하지 아니한다.



3)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추가 내용

- 가) 점형블록의 돌출점 1개의 지름은 35밀리미터 정도로 하며, 돌출점의 간격은 15밀리미터 정도로 한다.
- 나) 선형블록의 돌출선 1개의 폭은 35밀리미터 정도로 하며, 돌출선의 간격은 40밀리미터 정도로 한다.

다) **철재 점자블록은 사용을 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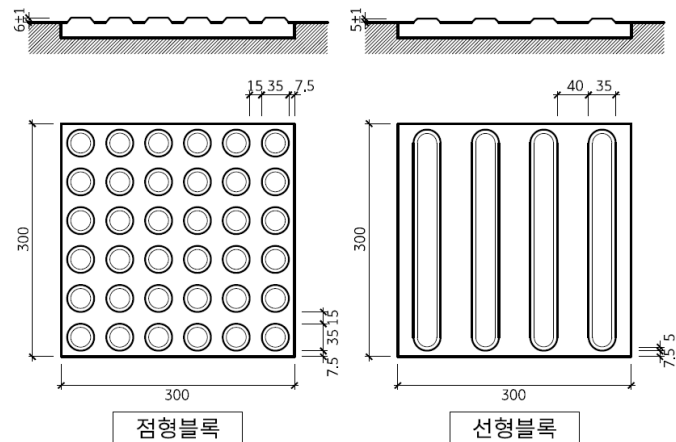
‘철재 점자블록은 사용을 금한다.’ 지침

- 표면을 논슬립 처리하더라도 금속재질의 점자블록은 설치하지 아니 함을 뜻한다.

- 라) **점자블록의 겉모양**은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의 법규 도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점자블록의 겉모양’ 지침

- 점형블록은 36개의 원형으로, 선형블록은 돌출선의 양끝단을 반구형으로 함을 뜻한다.



* 철재 점자블록은 빛이 반사하고 미끄러우며 황색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음.
* 점자블록 모양 및 치수 등은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에 준하도록 함.

12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기본 원칙

시각장애인이 건축물의 정보와 형태, 배치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적용 범위

건축물의 주출입구(문) 들어오기 전의 전면 공간을 적용 범위로 한다. 단 지형상, 시설 특성상 부출입구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할 경우 적용 범위는 부출입구 전면으로 한다. 대지면적 내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각 주출입구 전면을 적용 범위로 본다.

다. 설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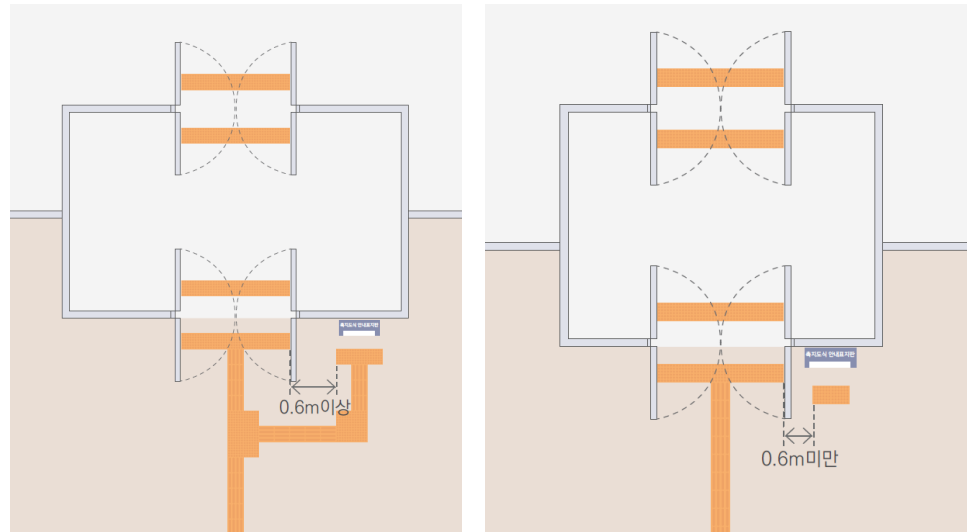
1) 일반사항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지침

- 점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까지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연결 설치하여야 함을 뜻한다.
- 접근로에서 주출입구까지 설치한 점자블록에서부터 유도·안내설비까지 점자블록을 추가로 연결 설치하여야 하며 유도·안내설비 전면 0.3미터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
- 상기 지침에도 불구하고 점자안내판 등 유도·안내설비가 주출입구와 가깝게 설치한 경우(주출입문 전면 점형블록에서 0.6미터 이내 설치한 경우 등) 선형블록의 설치는 생략가능하나, 유도·안내설비 전면 점형블록은 설치하도록 한다.



2)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
- 나)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 다) 의료시설
병원·격리병원
- 라) 교육연구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 마)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 바) 업무시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2)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라. 세부 기준 및 지침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 지침

- 시각장애인이 돌출된 선과 점자를 통해 건축물의 기본 형태와 구조 주요시설, 층 정보 등을 함께 촉지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 복잡한 구조를 너무 세밀하게 표기하거나 건축설계도서를 바로 적용하여 표기할 경우 시각장애인이 위치 정보를 인지하기 어렵다.
- 점자안내판의 점자도서(또는 시안)의 세부 지침은 촉지안내도 단체표준(SPS-KBUWEL001:5686)을 준용하도록 한다.

나)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같음**할 수 있다.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같음’ 지침

- 비시각장애인을 위한 일반안내도에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를 제공할 수 있으나, 해당 점자 병기한 판 자체의 재질을 두께 0.3밀리미터 이상의 내마모성이 좋은 재질로 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시공하여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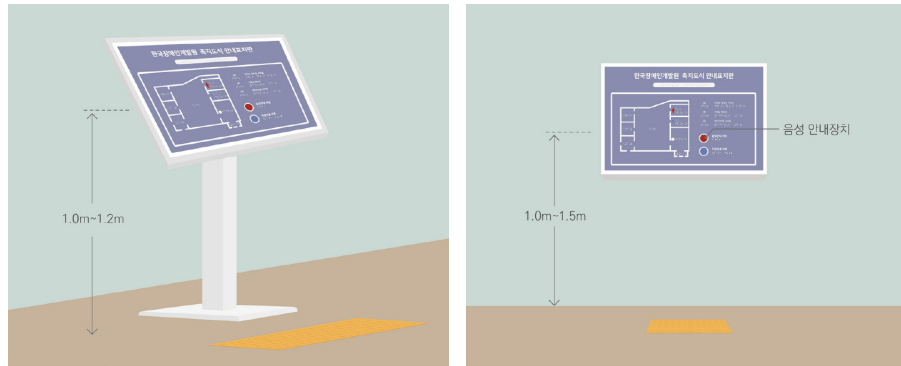
다)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①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 지침

- 안내판에 쉽게 손을 얹을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함을 뜻한다.

②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 지침

- 안내판에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해야 함을 뜻한다.
- 점자안내판의 형태,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중심선의 높이는 1.3미터 정도로 설치하도록 한다.



2) 음성안내장치

시각장애이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 지침

- 점자안내판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 꼭 필요한 부분을 음성으로 안내함을 뜻한다.
- 꼭 필요한 부분은 시설명, 현재 위치에서 주출입문을 진입 후 주요시설의 위치 등이다. 가까운 위치에 별도의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가 있는 경우 유도·안내설비의 설치 위치도 안내한다.
- 음성 안내의 출력 시간은 15초 내로 설정하도록 하고 여성 음성으로 한다.
- 소리크기는 60데시벨 이하로 하되, 주변 환경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음량을 조절할 수 있다.

3) 기타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이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시각장애이용 유도신호장치’ 지침

- 시각장애이용 리모콘 동작으로 위치와 유도 안내 정보를 음성으로 출력하여 시각장애인을 유도해주는 음성유도기를 뜻한다.

② ‘특수신호장치’ 지침

-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한 비콘, 초음파광대역 등 IOT신기술이 접목한 수신장치와 모바일의 앱으로 발신하는 방식 등 신기술이 접목한 장치가 연구 개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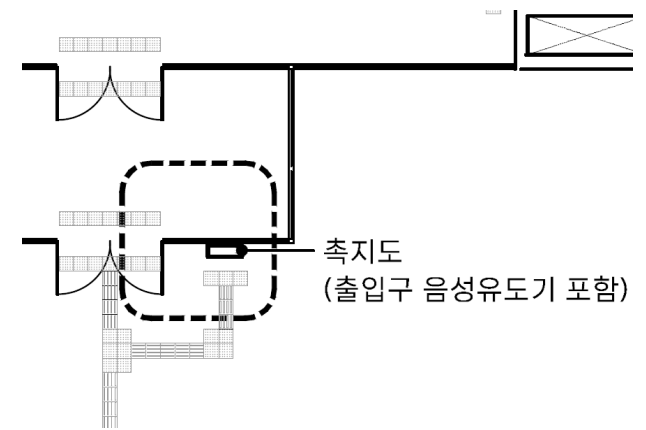
4)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추가 내용

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설치기준 중 제3호 가목의 (11)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점자블록을 연계 설치**하여야 한다.

‘점자블록을 연계 설치’ 지침

- 바닥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점자안내판을 올바른 방향으로 촉지할 수 있도록 함을 뜻한다.
- 접근로 선형블록에서 점자안내판 전면까지 선형블록을 연계 설치하고 전면 0.3미터에 점형블록을 3장 설치한다. 단, 점자안내판의 크기와 설치 공간을 고려하여 2장 설치도 가능하다
- 전면 0.3미터 치수는 점자안내판 돌출부의 바닥방향 수직 연장선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다) 점자안내판의 시안은 **SPS-KBUWEL001:5686 ‘촉지안내도 단체표준’**을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SPS-KBUWEL001:5686 ‘촉지안내도 단체표준’ 지침

- e-나라표준인증에서 촉지안내도 단체표준이라고 검색하거나 한국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라) 점자안내판의 오른쪽 하단에는 음성안내 버튼을 설치한다.

마) 기타 유도신호장치는 **주출입문의 상단 가운데**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출입문의 상단 가운데’ 지침

- 음성유도기의 세부 설치 위치는 문 통과유효폭의 가운데 상단에 설치해야 함을 뜻한다.
- 문의 측면이나 고정문 등에 설치될 경우 오히려 시각장애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바) 점자안내판의 **안내버튼이 음성유도기 기능을 추가** 할 수 있다.

‘안내버튼이 음성유도기 기능을 추가’ 지침

- 점자안내판의 음성 버튼에 음성유도기 기능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의 유도 안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정보 제공할 수 있다.

13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가. 기본 원칙

시각장애인이 위급한 상황에 건축물에서 지상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 동선에 연속적으로 경보 및 피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적용 범위

건축물 내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모든 층과 사무실 등을 적용 범위로 한다.

다. 설치 기준

1) 일반사항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 (1)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2) 지역아동센터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 (1) 공연장
- (2) 안마시술소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 및 관람장
- (2) 집회장
- (3) 전시장, 동·식물원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바) 의료시설

병원·격리병원

사) 교육연구시설

- (1)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 (2)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3)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아)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자)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차) 업무시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2)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카) 숙박시설

-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2) 관광숙박시설

타) 방송통신시설

- (1)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2)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파) 장례식장

라. 세부 기준 및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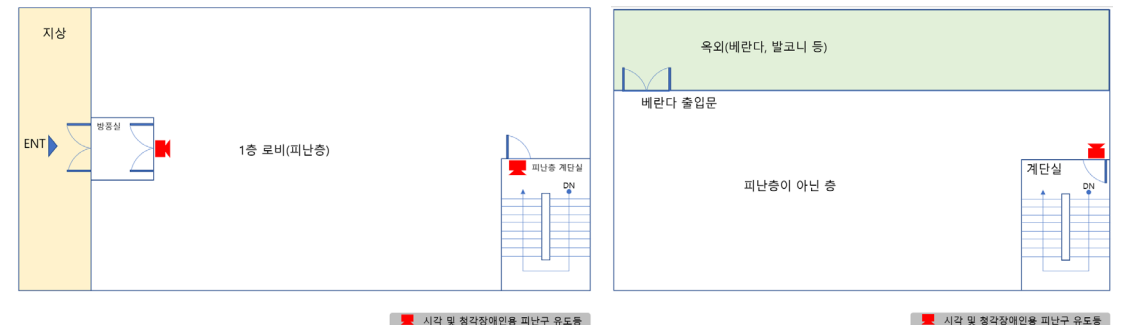
1)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 지침

- 피난구 유도등에 점멸 기능의 경광등과 음성 출력이 되는 스피커가 설치된 유도기능과 피난기능이 통합된 설비를 뜻한다.(유도설비와 피난설비가 결합한 설비를 뜻한다.)
- '복합유도등', '음성점멸유도등'은 잘못된 표현으로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이 올바른 용어이다.

②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 지침

- 설치 위치는 피난층의 경우 밖으로 나가는 출입문(복도에서 나가는 방향에 면한 문)의 상단에 설치하고 피난층이 아닌 층은 피난 계단으로 진입하는 방향에 설치하도록 한다.
- 또한 피난층의 계단에는 피난층에 도달했음을 알려주기 위해 시각 및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 옥상 출입문, 단순 옥외 공간 출입문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가. 기본 원칙

시각장애인이 객실 또는 침실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나. 적용 범위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의 객실 또는 침실을 적용 범위로 한다.

다. 설치 기준

1) 일반사항

시각장애인 등이 객실 또는 침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2)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가)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다) 숙박시설

-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2) 관광숙박시설

라. 세부 기준 및 지침

- 1) 객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점자표지판을 부착'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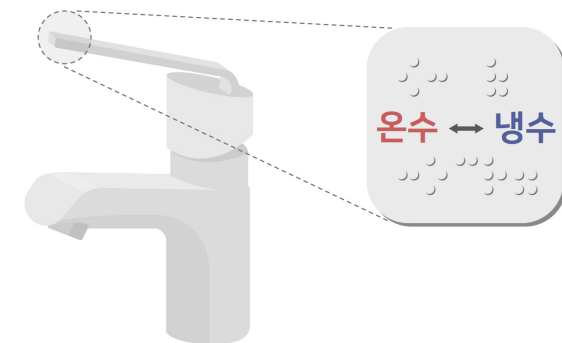
- "부착"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물체나 물건을 다른 물체나 표면에 붙이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스티커 방식이나 접착제로 붙이는 수준을 뜻할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벽면과 점자표지판을 결착하거나 체결하는 등의 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객실 등에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하고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실의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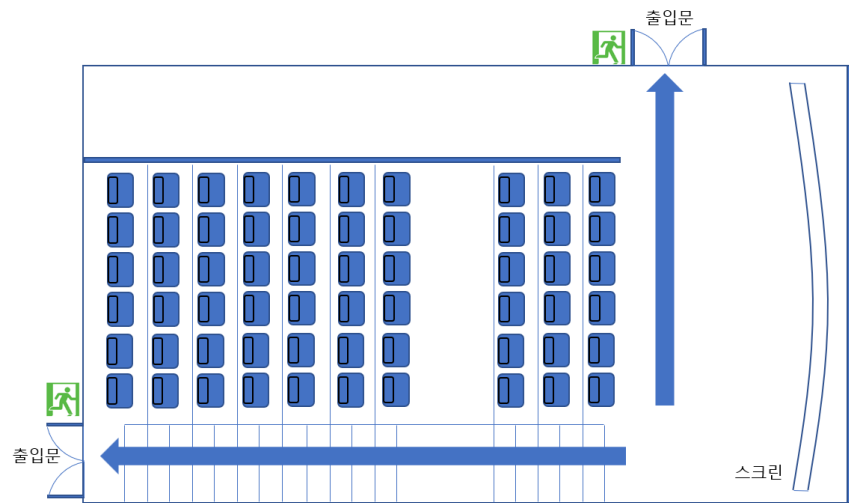
- 방향구분에 따라 냉수와 온수가 구분하여 나오는 수도꼭지는 온수와 냉수의 방향 정보를 알려주어야 하므로 냉온수를 표기하여야 함을 뜻한다.
- 설치 위치는 레버의 상단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레버 방향이 좌우 방향이 아니거나 특수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점자 표기를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점자를 표기한다.
- 표지판을 별도로 제작하여 설치할 때 습윤상태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특수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접착이 어렵거나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냉온수 점자 일체형 수도꼭지를 사용하도록 한다.

②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 지침

- 십자형 핸들 등 돌리는 수도꼭지는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사용하지 말아야 함을 뜻한다.



1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현재 상영관은 00관입니다. 출구는 총 2개로 상영관 왼쪽 벽의 앞쪽과 뒤쪽 벽의 오른쪽에 대피로가 있습니다.”

가. 기본 원칙

300석 이상의 영화관은 영상물을 상영할 때 장애인 전용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나. 적용 범위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을 적용 범위로 한다.

다. 설치 기준

1) 일반사항

영화관에서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피난안내 영상물을 제작하여 상영하도록 한다.

2)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
- 나)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 다) 교육연구시설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라)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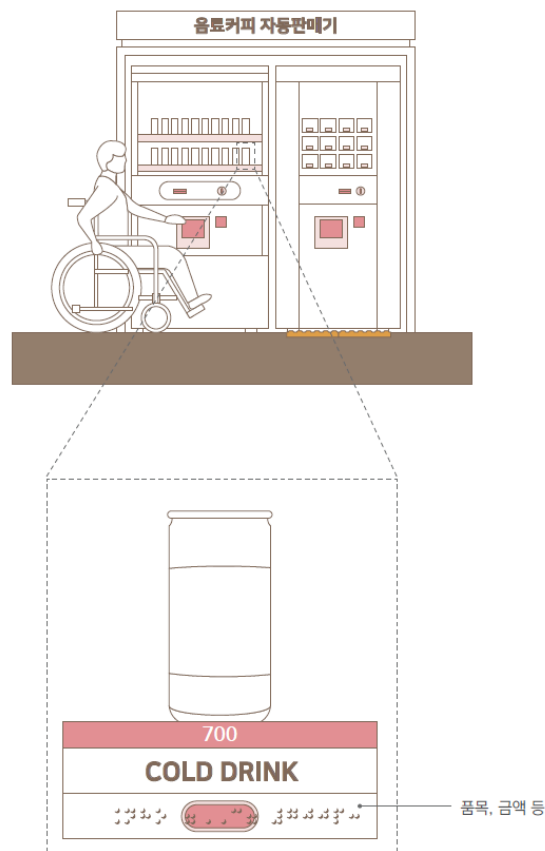
라. 세부 기준 및 지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 별표 2의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중 8.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

‘화면해설’ 지침

- 시각장애인이 영화상영관에서 안전하게 피난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 영상물의 안내 내용이 제공되어야 함을 뜻한다.
- 피난 안내 영상물의 안내 내용에는 출구의 개수, 상영관 기준 대피로의 위치 안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6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가. 기본 원칙

시각장애인이 매표소(또는 자동발매기)·판매기 및 음료대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적용 범위

매표소(또는 자동발매기)·판매기 및 음료대별 최소 각 1곳 또는 1대를 적용 범위로 한다.

다. 설치 기준

1) 일반사항

매표소(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
- 나)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 다)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라. 세부 기준 및 지침

1) 기타 설비

가)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 지침

- 자동판매기와 자동발매기의 이용 목적 해당하는 모든 조작 버튼에는 목자에 준하는 점자를 표기함을 뜻한다.
- 조작버튼 외 투입구, 물품 나오는 곳에도 점자를 표기하도록 한다.

나)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 지침

- 시각장애인이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설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함을 뜻한다.
- 매표소와 자동발매기가 여러 대 있을 경우, 최소 1대 이상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록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1. 점자블록
2. 점자표지판
3.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
4. 음성유도기
5. 시각 및 청각장애이용 피난구 유도등
6.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III 부록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1 점자블록

가. 기능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과정 중 행해지는 직선보행, 방향전환, 목적지 발견 3요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보다 정확한 보행위치와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편의시설이다.

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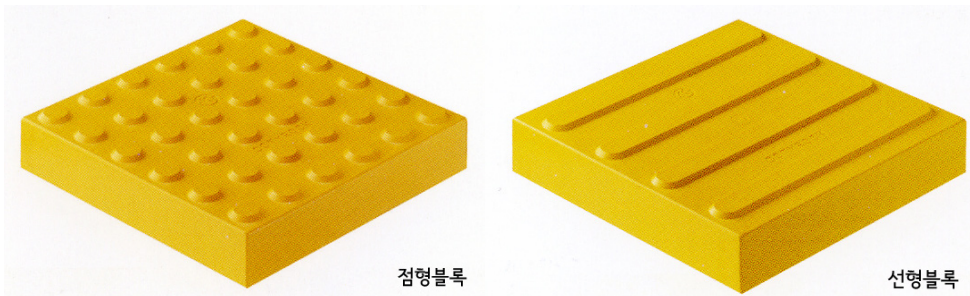
기능과 형태에 따라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으로 나뉜다.

1) 점형블록

점형블록은 위치 경고용으로 보행 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 목적지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며, 장애물이나 위험지역을 경고하는데 사용한다. 점형블록의 형태는 가로30센티미터×세로30센티미터 안에 일정 규격에 맞추어 36개의 원뿔절단형으로 구성한다.

2) 선형블록

선형블록은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에서 목적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정확히 직선 방향을 잡는데 사용된다. 끝나는 지점은 점형블록으로 마감하여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음을 알려주도록 한다. 선형블록의 형태는 가로30센티미터×세로30센티미터 안에 4개의 원뿔절단형 직선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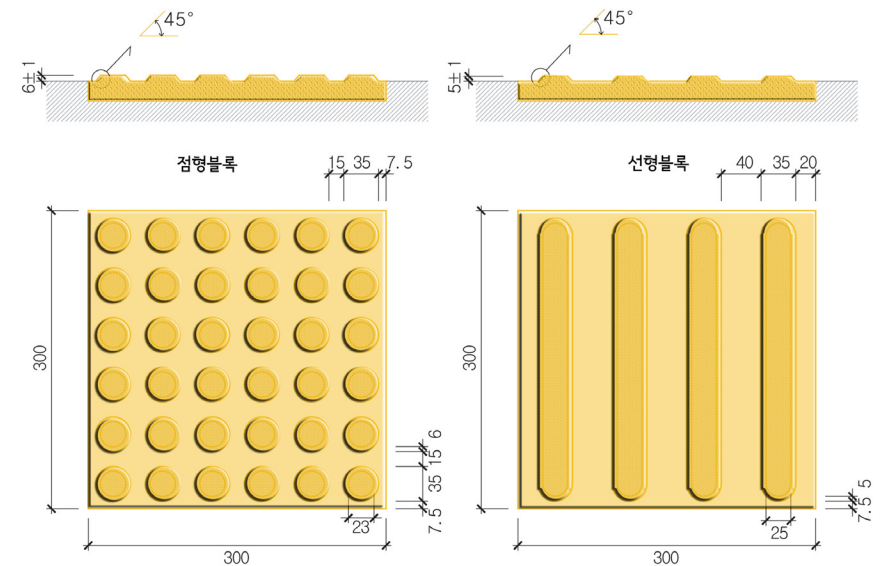


점형블록

선형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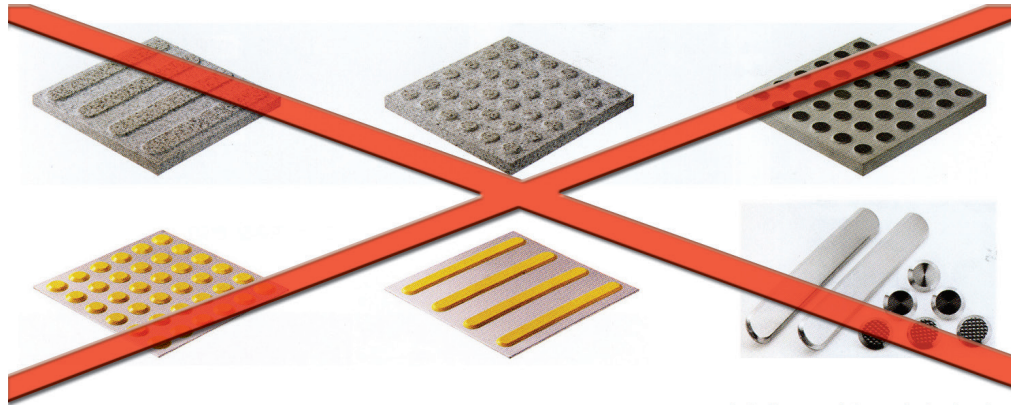
다. 규격

- 1) 점형블록은 30센티미터×30센티미터의 사각 판에 36개의 돌출된 원뿔절단형으로 구성한다. 점의 크기는 지름 3.5센티미터, 높이는 0.6±0.1센티미터가 적당하며, 점의 간격은 1.5센티미터로 한다.
- 2) 선형블록은 30센티미터×30센티미터의 사각 판에 돌출된 원뿔절단형 직선이 네 줄로 구성한다. 돌출선의 폭은 점형블록의 돌출점과 같은 크기인 3.5센티미터가 적당하며,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한다.
- 3) 점자블록의 색상은 황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닥재 색상이 황색계열일 경우에는 색상 대비를 위해 흰색 또는 녹색, 청색 등으로 한다.



라. 재질

- 1) 점자블록의 재질은 주로 고강도콘크리트, 석재 등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한다.
- 2) 점자블록의 돌출부와 하부가 일체형인 제품 사용하도록 한다.
- 3) 실외에는 고무소재, 합성수지 등 내구성, 내마모성이 떨어지는 제품 사용을 금하도록 한다.
- 4) 비나 눈 등의 물기에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철재 사용은 일절 금한다.
- 5) 모든 점자블록은 기술표준원(KATS)의 KS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표준번호 KS F 4561 참조)



사용을 금하는 재질의 사례

마. 시공

점자블록은 바닥에 매립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돌출하단면을 바닥면에 일치하도록 한다. 현장조건에 따라 매립시공이 불가능 할 경우 앵커볼트나 피스고정 등 탈착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되 돌출하단면과 바닥면의 높이 차이를 최소로 하고 각 지자체의 보도 포장 시방서 및 지침에 준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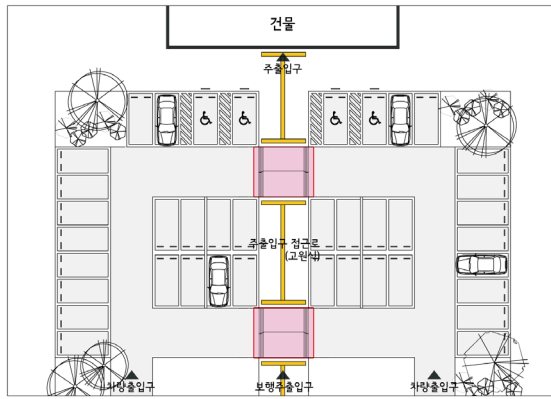
바. 유지 및 보수

- 1) 점자블록은 시공된 후 매 년 정기적으로 점검·보수한다.
- 2) 점자블록이 파손 또는 유실 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한다.
- 3) 비나 눈 또는 기타 이물질 및 장애물로 덮여있으면 즉시 치운다.
- 4) 가설 상가 및 기타 가설물로 점자블록의 동선을 방해하는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한다.

사. 설치 원칙

- 1) 선형블록은 돌출선이 유도 대상시설의 방향과 평행하도록 설치하고, 점형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주의해야 할 위치나 유도대상시설 등의 정확한 위치확인이 쉽도록 30센티미터 전면에 설치한다.
- 2) 선형블록의 경우 시각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보행 가능한 보도, 접근로에 연속적으로 설치하며, 점형블록은 선형블록의 굴절 및 시작, 끝지점, 시설주출입구, 횡단보도 전면(교통섬 포함), 음향신호기 수동식 버튼 전면, 계단 전면, 승강기 조작반, 버스정류장 및 노상시설 등 장애물 전면 및 측면에 30센티미터 이격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점형블록은 주의, 환기, 방향성 인지를 위해 대상물에서 해당 대상물의 폭만큼 30센티미터 전면에 설치한다. 다만 횡단보도 등 통행상 안전과 바닥마감 등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30~90센티미터 범위 안에 설치한다.(보통 횡단보도 전면에는 2줄 설치를 원칙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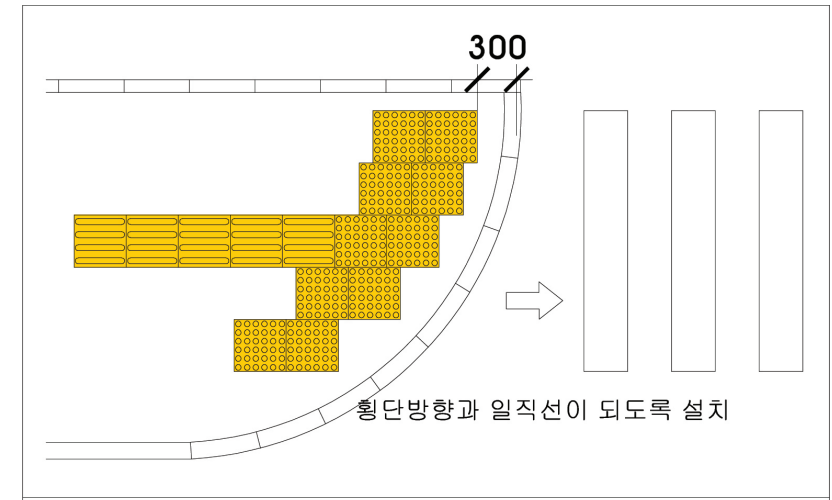
- 4) 분기점이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굴절지점은 점형블록을 선형블록의 2배 넓이로 하여 확인이 쉽도록 설치한다.
- 5)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한다.
- 6) 점자블록은 현장 가공해서 설치하면 아니 되며 정규격 그대로 설치한다. 단, 선형블록은 현장 조건상 부득이하게 이격거리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 현장 가공한다.
- 7) 점자블록을 연이어 설치할 경우에는 같은 규격,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 8) 위험한 지역을 둘러막을 때에는 점형블록을 사용하고 보행동선과 마주치는 가로선은 2줄(60센티미터)로 설치하고 보행동선과 평행한 세로선은 1줄(30센티미터)로 설치한다.
- 9) 점자블록 시·종점 인근의 선형블록은 보행자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평행 연장선상으로 유도한다.
- 10) 점자블록 간에 접하는 4각의 모서리가 서로 맞물리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11) 계단, 출입구의 진입을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구분한 경우, 점자블록 설계는 들어가는(타는) 방향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12) 선형블록 외곽선으로부터 좌우 최소 60센티미터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단, 폭이 1.5미터미만인 경우 중앙에 선형블록을 진행방향에 맞게 설치한다.
- 13) 외부공간에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보도, 접근로, 외부시설(승강기, 계단, 경사로 등)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14) 관공서, 복지관 등 공공건물 인근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선형블록은 해당시설 접근로까지 연계하여 선형블록을 설치한다.
- 15) 횡단보도까지의 올바른 유도를 위해 선형블록의 돌출선이 횡단하는 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하며, 선형블록은 한줄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 16)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기 전면에도 점형블록을 2장 설치하도록 한다.
- 17) 접근로에 부득이 차량과 교행이 발생할 경우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횡단보도 폭 만큼 점형블록을 한줄로 차도 0.3미터 전면에 설치하도록 한다.
- 18) 대지면적 내 보행자 횡단시설의 턱낮춤에 차량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를 설치할 경우 전면 0.3미터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



2방향 꺾이는 경우	3방향 꺾이는 경우	4방향 꺾이는 경우
공간이 협소하여 간소화 설치 경우	30cm 초과 맨홀 등이 있는 경우	30cm 이하 트렌치 등이 있는 경우

180°	165°초과~180°이하	135°초과~165°이하	105°초과~135°이하
90°	75°초과~105°이하	75°이하	

모서리가 맞지 않음	선형블록이 직선이 되지 않음	불필요한 현장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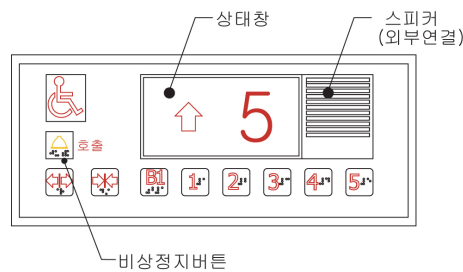
2 점자표지판

가. 기능

점자표지판은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시설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화장실과 건물 실내출입문 벽면, 계단, 에스컬레이터, 경사로의 손잡이 및 승강기 조작반 등에 점자가 표기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위치와 방향, 용도 및 목적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나. 종류

- 1) 벽면 점자표지판: 공중의 사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화장실 등 건물 실내출입문(구)의 벽면에 설치한다.
- 2) 손잡이 점자표지판: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복도 등 매개시설, 내부시설 손잡이에 설치한다.
- 3) 기타 점자표지판: 승강기 조작반, 음향신호기의 수동식 버튼, 생활가전제품 조작반 등에 점자가 자체 포함된 버튼을 사용하거나 점자 표기한다.



다. 구성

글자와 점자, 그리고 픽토그램을 같이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중증시각장애인뿐 만 아니라 저시력 시각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시안(유니버설디자인)으로 구성한다. 또한, 점자를 모르는 중도실명 시각장애인을 위해 2차원 AD바코드나 NFC, QR 등의 태그를 부착하거나 기타 신기술을 활용하여 음성으로 사무실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벽면 점자표지판의 간단한 호수 등의 정보는 목자를 양각화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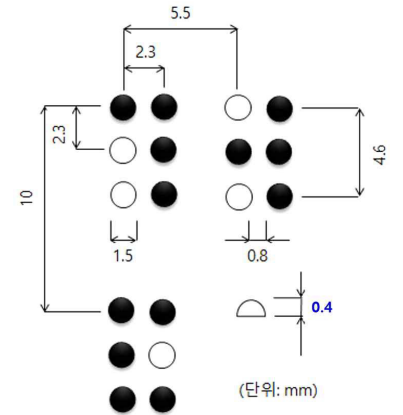
라. 규격

1) 점자규격

점자표지판에 표기되는 점자는 한국 점자 규정의 물리적 규격을 준수하도록 하며, 점자 표기는 반구형으로 한다. 부식형의 경우 손뼌, 촉지 가독성 등으로 인해 사용을 금한다. 또한, 제작된 점자표지판은 점역교정사의 검수를 받아 실제 촉지가 가능한지 확인 작업을 한다. 한국 점자 사용 규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점자의 물리적 규격에 대하여 대상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점 높이: 최솟값 0.4mm 최댓값 0.9mm
- 나) 점 지름: 최솟값 1.5mm 최댓값 1.6mm
- 다) 점간 거리: 최솟값 2.3mm 최댓값 2.5mm
- 라) 자간 거리
 - (1) 종이, 스티커: 최솟값 5.5mm 최댓값 6.9mm
 - (2) 피브이시(PVC): 최솟값 5.5mm 최댓값 7.3mm
 - (3)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최솟값 5.5mm 최댓값 7.6mm
 - (4) 기타 재질: 위의 규격을 준용하여 사용



마) 줄간 거리: 최솟값 10.0mm

2) 표지판 규격

- 가) 벽면용: 글자와 점자가 같이 표기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 나) 손잡이용: 보통 가로는 15센티미터, 세로는 손잡이둘레 +1센티미터로 하지만 내용이 많아 표기가 불가능한 경우 가로 길이를 늘리도록 한다.

3)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안내표지 설치

-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서식 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에는 장애인 안내표지 기본형과 시각장애인용 안내표지를 같이 표시한다.
- 나) 단, 안내표지를 표시할 공간이 협소한 경우 기본형은 생략 가능하다.



마. 재질

- 1) 내마모성과 시공성이 좋은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며, 표지판의 두께는 최소 두께 0.3밀리미터 이상되도록 한다.



- 2) 폴리카보네이트: 뛰어난 내충격성과 내후성, 시공성 우수, 내열성이 높고 저온 특수성이 우수하고(-40℃~135℃), 흡수성이 적으며 자기 소화성이 아주 좋다. 무독성이며 물, 약산에 아주 좋다. 주로 벽면, 손잡이 점자표지판에 쓰인다.
- 3) 알루미늄: 뛰어난 내충격성과 내후성, 시공성이 우수하며 반영구적, 흡수성이 없다. 주로 벽면, 손잡이 점자표지판에 쓰인다.
- 4) 아크릴: 제조가 용이하며, 주로 벽면 점자표지판에 쓰인다.
- 5) 투명테이프(다이오, 모텍스 등): 자동판매기 및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표지판에 점자를 표기한 테이프를 덧붙이는 식으로 설치한다. 보존력이 약하므로 임시방편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한다.

바. 시공

- 1) 벽면 표지판 설치시 본드 및 실리콘으로 설치하여 수시로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시공한다.
- 2) 손잡이 점자표지판은 리벳으로 압착 시공하여 틈 없이 설치한다. 본드, 양면접착, 테이프 부착으로 시공할 경우 손잡이 인근의 온도차, 손때 등 자칫 이물질이 발생되고 떨어지거나 틈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을 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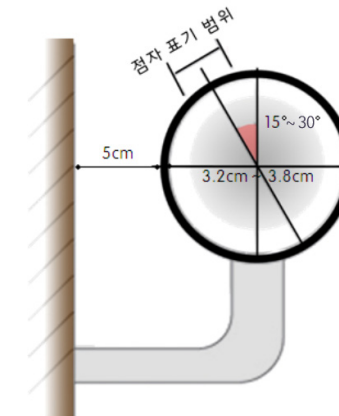
사. 유지 및 보수

- 1) 위치 정보 및 공간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점자표지판의 내용도 즉각 수정한다.
- 2) 점자표지판의 표면은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하게 유지한다.
- 3) 점자표지판의 점자가 일부 소실되거나 마모되어 인지하기 힘든 경우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한다.
- 4) 설치된 지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점자표지판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즉시 교체한다.

아. 설치 원칙

- 1)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시설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화장실과 건물 실내출입문 벽면, 계단, 에스컬레이터, 경사로의 손잡이 및 승강기 조작반 등에 점자가 표기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위치와 방향, 용도 및 목적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2) 점자표지판은 가급적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알루미늄 판 등 내구성 및 시공성이 우수한 재질로 제작하고 저시력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글자도 표기한다.

- 3) 벽면 점자표지판의 설치 위치는 바닥면으로부터 점자표지판의 중심선이 1.5미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시설물의 용도와 주요 이용자의 신장 등을 고려하여 설치 높이는 조정 가능하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적용의 완화에 의거함)
- 4) 손잡이 점자표지판의 설치 위치는 계단, 경사로, 복도 손잡이의 시작과 끝 부분의 0.3미터 수평손잡이 중간에 설치하고 계단의 경우 가급적 점자블록과 계단의 이격 거리에 맞추어 설치한다. 단, 손잡이 고정 장치로 인해 수평손잡이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가능한 근거리에서 설치한다.
- 5) 복도 손잡이의 경우 시작과 끝부분 0.3미터 수평손잡이에 설치하고 시설에 해당하는 점자문구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소화전과 같은 시설은 설치를 생략함)
- 6) 손잡이에 점자표지판 설치할 경우 왼손으로 읽는 것을 원칙으로 벽면쪽으로 15°~30° 기울여 시공한다.(난간에 고정된 손잡이인 경우는 난간 쪽으로 15°~30° 기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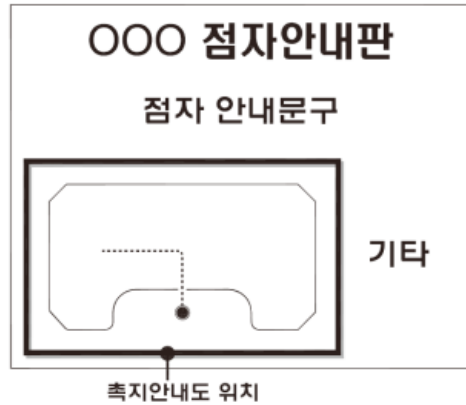


- 7) 승강기 조작반 및 음향신호기의 누름버튼 점자표지판은 반드시 조작반과 동일 재질의 일체형으로 한다.
- 8) 손잡이 점자 표기 문구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도록 한다.

	구 분	점자 표기 문구
공 공 건 물	내부계단 손잡이 (또는 경사로 등)	화살표 0층 000, 000 (예: → 2층 사회복지과, 재활교육팀)
	주출입구 계단 및 경사로 손잡이	화살표 000시설 주출입문, 화살표 좌측 00, 우측 000 방면(또는 나가는 곳) (예: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관 주출입문, → 좌측 별관, 우측 주차장동 방면)
	복도 손잡이	화살표 000실, 화살표 0층 계단실, 화살표 남자화장실 (예: → 시각편의센터사무실, → 2층 계단실, ← 남자화장실)



3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



가. 기능

점자안내판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시설의 주요 동선을 돌출된 선과 점자로 표현한 안내판으로 시설의 공간 현황 및 이동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특정 랜드마크 지점에 설치하여 목표지점까지의 보행동선을 확인하고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도울 목적으로 설치된다.

나. 종류

점자안내판은 설치 위치와 형태에 따라 스탠드형과 벽면형으로 나뉜다.

- 1) 스탠드형 점자안내판: 외부출입구 인근 접근이 용이한 곳에 스탠드형으로 제작, 설치하여 공간 정보를 제공한다. 공간의 제약이 있으며 위치 변동 가능성과 자칫 협소한 통로에 설치하면 보행장애물이 된다. 따라서 설치시 주변 음성유도기에서 유도해주는 등 유기적으로 설치한다.
- 2) 벽면형 점자안내판: 주출입구 및 접근이 용이한 곳에 벽면에 부착형으로 제작, 설치하여 공간 정보를 제공한다. 벽면에 설치함으로써 공간상 제약이 적지만 점자안내판의 내용이 많을 경우 안내판의 규격이 허용기준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설치시 주변 음성유도기에서 유도해주는 등 유기적으로 설치한다.

다.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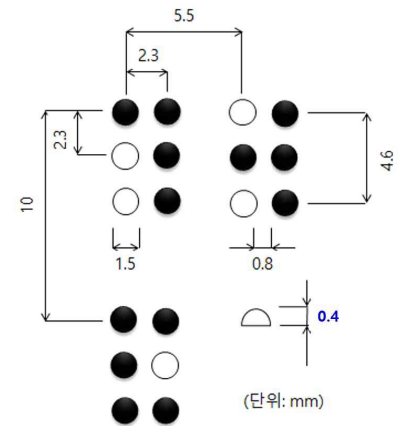
- 1) 구성은 소개 및 진행 안내(점자안내문구), 현위치, 촉지안내도, 유도동선, 기타안내 등으로 구성한다.
- 2) 글자와 점자, 그리고 픽토그램을 같이 표기하여 중증 시각장애인뿐 만 아니라, 비장애인 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안(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한다.

3) 일반적으로 소개 및 대략적인 진행에 대해 점자로 표기한 안내문, 실내 공간배치 현황 및 위치 정보에 대해 양각화 된 선 및 점 그리고 현위치와 점자 표기가 있는 '촉지안내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범례, 층별 안내, 음성안내 및 직원 호출 버튼을 추가한다.

라. 규격

점자안내판에 표기되는 점자는 점자 규격을 준용한다. 촉지안내도는 두손으로 연속적으로 촉지할 수 있는 넓이(최대 A3 사이즈)로 제작하도록 하며, 소개 및 진행 안내, 현위치, 층별 안내, 음성안내 및 호출 버튼 등 까지 포함한 전체 안내판의 크기는 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가급적 작게 한다. 점자 표기는 아래 그림과 같이 반구형을 원칙으로 하며 부식형의 경우 손뼌, 이질적 촉지감 등 이유로 사용을 금하도록 한다.

- 가) 점 높이: 최솟값 0.4mm 최댓값 0.9mm
- 나) 점 지름: 최솟값 1.5mm 최댓값 1.6mm
- 다) 점간 거리: 최솟값 2.3mm 최댓값 2.5mm
- 라) 자간 거리
 - (1) 종이, 스티커: 최솟값 5.5mm 최댓값 6.9mm
 - (2) 피브이시(PVC): 최솟값 5.5mm 최댓값 7.3mm
 - (3)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최솟값 5.5mm 최댓값 7.6mm
 - (4) 기타 재질: 위의 규격을 준용하여 사용
- 마) 줄간 거리: 최솟값 10.0mm



마. 재질

재질은 내마모성 및 내구성이 좋은 재질로 하며, 이질감과 손뼌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온도의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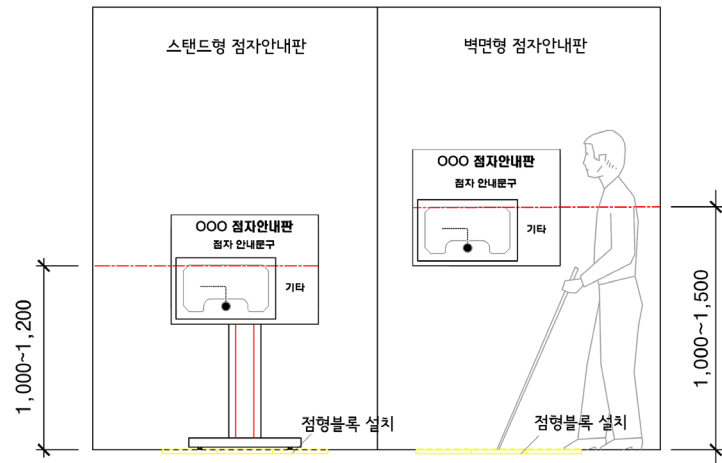
* 가) 나) 다) 항목은 세부내용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단체표준 'SPS-KBUWEL001:5686, 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도'를 준용하도록 한다.

바. 유지 및 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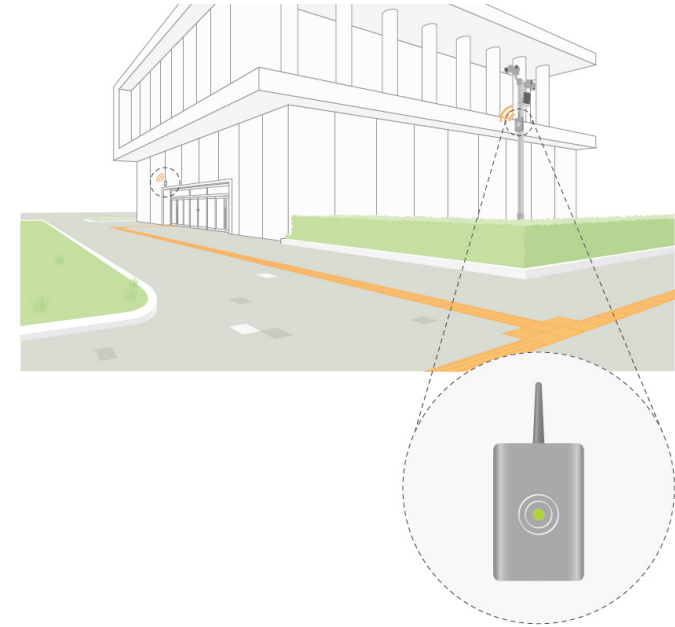
- 1) 시설 운영상 구조 변경 등으로 인해 배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점자안내판의 내용도 즉각 수정한다.
- 2) 점자안내판의 표면은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하게 유지한다. 만약 실외에 설치된 경우 차양막, 비막이용 캐노피를 설치하여 비나 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3) 점자안내판의 방위는 실제 건물배치와 일치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단, 이동식인 경우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방위 및 위치가 맞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사. 설치원칙

- 1) 외부출입구 인근 등 쉽게 찾을 수 있고 점자블록을 통한 유도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 2) 실제 시설 내부 배치와 동일한 방위로 점자안내판을 고정한다.
- 3) 점자안내판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1.2미터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한다. 다만, 점자안내판이 벽면형이거나 점자안내표시 내용이 많아 1.0~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판의 중심선이 1.0~1.5미터의 범위로 설치한다.
- 4) 점자안내판의 내용은 실내배치도와 설명으로 구성한다. 현위치에서 목표지점까지의 보행 동선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축지안내도의 선과 구분이 되도록 점선의 형태를 달리한다. 반드시 표기되어야 내용으로는 화장실, 계단, 승강기, 안내 등 이다.
- 5) 실내배치도는 최대한 단순화하고 현재위치, 목표지점, 각 회전지점과 필요한 랜드 마크를 반드시 표기한다.
- 6) 점자안내판의 내용인 각 내부시설이나 랜드마크는 그 위치에 직접 점자로 기입하도록 하며 범례로 표기하면 아니 된다.



4 음성유도기



가. 기능

음성유도기는 시각장애인이 이동할 때, 지하철 및 기차 역사,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등의 대중여객시설과 건물의 입구나 현관 및 각종 목표지점 등의 특정지점이나 시설에 부착하여 음향, 음성, 멜로디 등의 소리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그 위치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장치이다.

나. 근거

시각장애이용 음성유도기 무선규격 표준을 따른다.(KICS.KO-06.0046/R3, Standard of Audio Guiding Device for Visually Handicapped)

다. 유지 및 관리

시각장애이용 음성유도기는 점자블록이나 점자표지판과 달리 동작하는 편의시설이므로 월단위 등 주기적인 검사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라. 설치원칙

1) 설치장소

- 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 기술된 안내시설 중 유도 및 안내시설이 의무인 대상시설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 나) 시각장애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맹학교, 복지관, 공원 등의 시설에 설치한다.

다) 특별히 복잡하거나 알려야 할 장소로 시각장애인들이 인지하기 쉬운 곳에 설치 가능하다.

라) 시각장애인 단체나 시각장애인들이 설치하기를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 가능하다.

2) 음질, 크기, 안내멘트의 구성

가) 음질은 비교적 명료한 톤으로 베이스가 적어야 하고 실내에서는 안내멘트와 멜로디를 함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 소리크기는 실내는 40dB, 실외는 60dB로 한다. 단, 실외의 경우 07시~19시(오차범위 ±10분)에는 60dB로 하고, 19시~07시(오차범위±10분)에는 40dB로 한다.

다) 음향 크기는 수신기로부터 1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의 지면 1.2미터~1.5미터 높이에서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하며, 설치지점 주변소음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실무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크기를 증감한다.

라) 타이머의 작동은 변화가 또는 유도인구가 많은 경우는 07시~21시까지로 하고, 유도인구가 적고 변화가 아닌 경우는 07시~19시로 정한다.

마) 가급적 간단하게 구성하고 지하철 역사의 맞이방(대합실)에서와 같이 인접거리에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가급적 안내멘트의 내용이 간결하게 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휘로 구성한다.

바) 안내멘트 소리의 크기는 실외 10미터, 실내 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잘 들리도록 하며 음성은 비교적 명료한 톤인 여성음으로 한다.

3) 설치 방법

가) 시설물의 출입구,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 개표구, 승강장 등의 편의를 목적으로 음성안내를 하고자 하는 지점의 기둥 또는 벽면, 안내표지 등에 시설구조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출력 방향은 보행동선에 맞게 한다.

나) 수신기 함체는 지상으로부터 2.0~2.5미터 높이에 설치한다.

다) 수신기는 자동발매기, 개표구, 화장실, 내부 및 외부계단, 외부 승강기, 승강장 끝부분 및 매개시설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음성유도기의 수신거리(리모콘 동작거리)는 실외 10미터, 실내 5미터로 하며 음성 유도가 필요하여 협소 공간에 2개 이상 설치해야 할 경우 우선순위를 두어 순차 제어하도록 한다.

마) 공간이 협소하여 음성유도기의 설치가 생략된 경우 인근에 설치된 음성유도기에서 추가 안내한다.

5 시각 및 청각장애이용 피난구 유도등



가. 기능

시각 및 청각장애이용 피난구유도등(이하 시청각유도등)은 비상시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을 출력하여 피난 방향을 유도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경광등이 점멸하여 피난 위치를 알리기 위한 설비로 경보기능과 유도기능이 결합한 소방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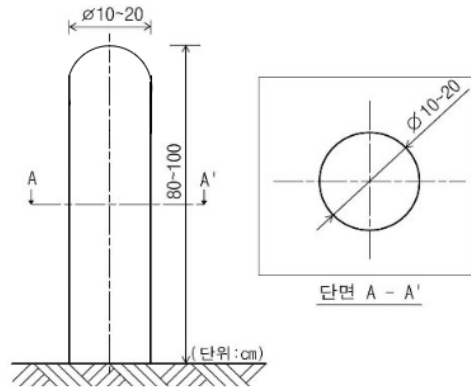
나. 근거

시청각유도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다. 설치원칙

- 1)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층의 경우 외부 출입문의 상단에 시청각유도등을 1개 설치하고 피난층이 아닌 경우는 피난을 위한 계단에 피난층 방향으로 1개를 설치한다.
-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 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한다.
- 3) 지하층까지 계속 연결된 계단실의 경우 1층에서 피난층임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피난층인 1층 계단실 내에도 시청각유도등을 설치한다.
- 4) 지상층 등 피난층의 경우 공용부인 복도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설 규모의 특성과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 공간에서 바로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에도 설치할 수 있다.

6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가. 기능

볼라드는 횡단보도 인근의 턱 낮추기 구간 등 보도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차도와 보도 경계면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나. 근거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률」의 시행규칙 [별표 2] 보행시설물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제9조제1항관련]을 준수하도록 한다.

다. 설치원칙

- 1)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 2) 볼라드는 밝은 색의 반사도료(反射塗料)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3) 볼라드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로 하고, 그 지름은 10~20센티미터로 한다.
- 4) 볼라드의 간격은 2미터 정도로 한다.
- 5) 볼라드는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6) 볼라드의 0.3미터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1장 이상 설치한다.
- 7) 볼라드의 상단부는 상단의 예와 같은 반구형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 8) 선형블록에서 최소 60센티미터 이격하여 설치한다.

참고문헌



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학술지, 자료집

- 한국장애인개발원(2021)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수정2판)
- 한국장애인개발원(202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 여객시설 편
- 국립국어원(2021) 점자편의시설 표준 지침서
- 한국장애인개발원(2020)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안내 및 유도 매뉴얼
- 한국장애인개발원(2019)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연구진

연구책임	이진원
공동연구	이소연
공동연구	김홍진
공동연구	홍서준
공동연구	박송이

자문위원

김원식 부장(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안성준 팀장(한국장애인개발원)
윤영삼 연구교수(건국대학교)
허주현 관장(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위원은 가나다순입니다.

2024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 공공건물편

2024 Installation Manual of Facilities for the Blind - Public Buildings

발행일	2024. 12. 10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601호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Tel. 02-799-1020~1025 Fax. 02-799-1017
홈페이지	http://www.kbufac.or.kr/
메일	kbuwel1000@naver.com

ISBN 978-89-89286-64-6

본 매뉴얼의 내용을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